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방안 연구

2024. 4



경상북도의회

제 출 문

경상북도의회 귀하

본 보고서를 「경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 4.

연 구 기 관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 지역정책연구소

연구 책임자 : 이준호(동국대학교)

참여 연구자 : 정윤길(동국대학교)

본 보고서는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이 경상북도의회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하였으며, 보고서의 내용은 경상북도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I. 서	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범위와 방법	2
II.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관한 이론적 배경	4
1.	현행 「지방자치법」의 의의	4
1)	지방의회 권한 강화	4
2)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6
2.	위임자-대리인이론의 관점에서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7
3.	지방정치의 맥락과 지방의회의 위상	10
1)	지방정치와 지방의회	10
2)	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	11
3)	지방의회 역할의 증대	13
4.	지방의회의 의정역량	15
1)	지방의회 지원조직	16
2)	전문위원제	21
3)	의원 보좌인력	21
5.	지방의회 역량과 지방의회 자치법규 체계	24

Ⅲ. 국회-지방의회 관련 법규체계 비교분석	27
1. 국회 관련 법체계	27
1) 국회 관련법률	27
2) 국회 관련 법규	28
2. 국회-지방의회 관련법규 비교	34
1)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비교	34
2) 국회법규체계	38
3) 지방의회 기본 조례의 필요성	39
3. 시사점	41
1) 국회 관련법규체계의 특성	41
2) 지방의회 자치법규체계의 특성	42
3)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기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	42
Ⅳ. 광역시도의회 자치법규 비교분석	43
1. 광역시도의회 자치법규체계: 기본 조례	43
1) 지방의회 기본 조례 현황	44
2) 지방의회 기본 조례 비교결과	47
2. 지방의회 사무조직 관련 조례	47
1) 의회사무처 설치조례와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의 의의	47
2)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와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비교표	50
3) 의회사무처 설치조례와 광역의회별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비교결과	56
3. 의회 공무원 인사 관련	57
1) 광역자치단체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57

2) 광역자치단체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62
4. 정책역량 지원 관련 조례	66
1) 광역자치단체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66
2) 광역자치단체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72
3)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7
4) 광역자치단체의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89
5) 광역자치단체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93
6)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98
5. 지방의회 활동의 자율성	103
1)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법평가 조례	103
2) 광역자치단체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	109
3) 광역자치단체의회 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14
4)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116
6. 비교분석의 종합	124
1) 자치법규체계: 기본 조례	124
2) 지방의회 사무조직 관련	125
3) 의회 공무원 인사관련	126
4) 정책역량 지원 관련	127
5) 지방의회의 자율성	130
V. 경북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방안	134
1. 경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 검토	134
2. 정책지원관 설치·운영 조례 또는 규칙 검토	139

3.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개선방안	142
4.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 검토	143
5. 광역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검토	144
6. 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검토	144
7. 의회 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검토	145
 Ⅵ. 결론	146
 참고문헌	150

표 목 차

<표 Ⅱ-1> 현행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관련 주요 개정내용	7
<표 Ⅲ-1> 국회 관련 법률 종류	28
<표 Ⅲ-2> 국회 관련법규의 종류 및 건수	29
<표 Ⅲ-3> 국회 규칙의 유형	29
<표 Ⅲ-4> 국회 규정의 종류	32
<표 Ⅲ-5> 「국회법」 - 「지방자치법(지방의회)」 비교	35
<표 Ⅲ-6> 국회법의 국회 규칙 위임사항	36
<표 Ⅲ-7> 지방자치법의 규칙위임사항	37
<표 Ⅲ-8> 회의규칙과 규칙의 비교	38
<표 Ⅳ-1> 광역자치단체 의회 기본조례 요약표	43
<표 Ⅳ-2> 광역자치단체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요약표	48
<표 Ⅳ-3> 광역자치단체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요약표	58
<표 Ⅳ-4> 광역자치단체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요약표	62
<표 Ⅳ-5> 광역자치단체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요약표	66
<표 Ⅳ-6> 광역자치단체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요약표	72
<표 Ⅳ-7>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요약표 · 77	
<표 Ⅲ-8> 광역자치단체의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요약표	89
<표 Ⅳ-9> 광역자치단체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요약표	93
<표 Ⅳ-10>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요약표	98
<표 Ⅳ-11> 광역자치단체조례 입법평가 조례 요약표	103
<표 Ⅳ-12> 광역자치단체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 요약표	110

<표 IV-13> 광역자치단체의회 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요약표	114
<표 IV-14>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요약표	116
<표 IV-15> 본 과제에서 검토한 경상북도의회와 타광역의회의 조례·규칙제정 비교표	133
<표 V-1> 경상북도의회 기본조례의 주요 내용	135
<표 VI-1> 경북도의회 자치법규 개선방향	149

그림목차

[그림 II-1] 위임자-대리인 관계	8
[그림 II-2] 자치법규 보유현황	14
[그림 II-3]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	15
[그림 II-4] 민츠버그의 조직구조	18
[그림 II-5] 의회 지원조직의 개념도	19
[그림 II-6] 분석 틀	26
[그림 III-1] 국회 법규체계	39
[그림 III-2] 의회 기본 조례 하의 자치법규체계	41
[그림 V-1]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체계 기본틀	136

I. 서 론

1. 문제제기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분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을 수 차례 개정하여 왔지만,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일반적 내용은 물론이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기능의 실질적 보장에 관한 내용에도 미흡한 점이 많았음
-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지방의회의 위상이 크게 강화되는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음(박기관, 2020)
-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다수의 규정을 담고 있는데, 그 주된 조항은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제28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103조),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제41조),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제5장),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제74조), 지방의원 겸직금지(제43조),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제65조)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개정 법의 취지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 그리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주민자치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에 직결되기 때문임
- 이러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서 지방의회 운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치조례 및 규칙의 정비가 요구됨
- 경상북도 의회의 자치법규는 2023년 현재 조례 27건, 규칙 18건, 규정 및 지침 16건 등 총 61건에 달하지만, 이러한 자치법규는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제·개정되어 현행 개정 「지방자치법」을 취지에 걸맞는 체계와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임

- 그러나 이에 대한 조사나 선행연구가 없어 바람직한 모델이 제시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시대에 발맞춘 의회 위상의 정립 및 의회 역량의 제고를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을 통한 체계화 과정이 요구됨

2. 연구의 목적

-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한 측면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최근 별도의 「지방의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기까지는 현행 「지방자치법」 하에서 의회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량을 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2020년 개정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투명성 취지에 적합한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현행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의 구성과 체계, 내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의회 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의회의 자치법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또한 경상북도의회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독립적 의회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 연구범위와 방법

- 연구의 범위는 광역지방의회의 자치법규에서 지방의회 역량에 관련된 내용에

한정함

- 광역지방의회 자치법규에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의회의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을 검토하기 보다는 지방의회 역량과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기 때문임
- 본 연구는 지방수준에서 의회의 자치법규를 분석대상으로 하지만, 국가 수준에서의 국회 관련 법규체계와 비교분석을 하고자 함
- 국회는 법규체계상 지방의회의 상위에 있지만, 의회 역량이라는 부분에서 관해서는 기본적인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연구의 이론적 접근방법은 문헌조사를 위주로 하며, 자치법규의 분석은 제도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주요 요인 간 비교분석 방법을 이용함

Ⅱ.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현행 「지방자치법」의 의의

- 2020년 12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그동안의 일부 개정과는 달리 지방 자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평가됨
- 그러한 이유는 주민주권의 개념을 근간으로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변화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임
- 이러한 주민주권은 중앙과 지방 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침
- 국민주권에 기초할 때 중앙-지방의 관계는 수직적 지시·감독을 통한 통제관계인 것에 반하여 주민주권의 경우 중앙과 지방을 수평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상호 협력적 관계로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조함
- 이처럼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고되어야 함
- 특히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그만큼의 책임성도 강조될 수 있음

1) 지방의회 권한 강화

- 2020년 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 중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현행 법률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음(제103조 제2항)
- 지금까지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명해 왔고, 일부 사무직원(별정직·계약직·기능직)에 대해서만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하여 왔음

- 그동안 이러한 방식에 따름으로써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일부에 국한된 임용권이 지방의회에 위임되어 있을 뿐, 직원의 대다수는 지방정부의 집행부와 순환보직 되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등이 결여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음
- 둘째,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
 - 즉, 현행 법률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임(제41조)
 - 그동안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원별 유급보좌관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번번이 무산되어 왔음
- 셋째,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이 수정되었음
 - 개정 전 「지방자치법」에서는 정례회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지만, 개정법에서는 정례회 집회일 및 운영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제53조 제2항)
 - 또한 종전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 연서로써 발의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되도록 개정하였음(제76조 제1항)

2)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방의회의 책임 강화와 관련된 규정들도 강화되었음
 - 첫째, 지방의원의 겸직에 관한 규제의 강화임
 - 원래 지방의원의 겸직제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었음
 - 개정법에서도 이 원칙은 유지하면서, 겸직금지 대상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또한 이와 더불어 겸직이 허용되더라도 겸직과 관련된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연 1회 이상 그 내용을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제43조 제4항)
 - 둘째, 지방의원의 윤리를 보다 더 확보하기 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였음
 - 현행법에서는 의무적으로 지방의원의 징계 등을 심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임(제65조)
 - 이에 더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되도록 하였음(제66조)
 - 이러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하여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자문을 맡도록 하였음
 - 셋째, 지방의회 표결방법의 원칙을 규정하였음
 - 그동안은 지방의회의 표결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관련 근거가 미비하였음
 -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

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하다는 원칙이 제시되었음(제74조).

<표 II-1> 현행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관련 주요 개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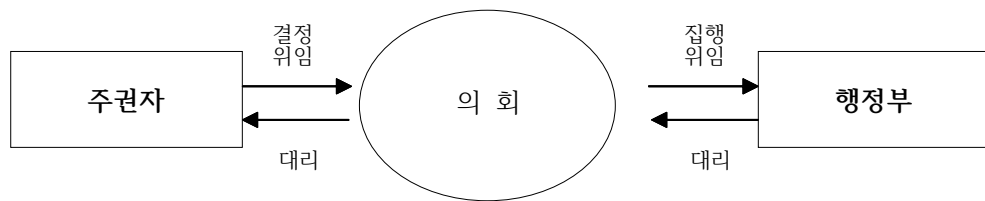
구 분		개정 전	현행
권한 강화	사무직원 인사권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단체장에게 부여(단, 임용권 일부를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 위임)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제103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규정 없음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신설 (제41조)
	의회 운영방식	회의 운영 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 법에 상세 규정	의회 운영을 조례로 위임해 지역 별로 정하도록 자율화 (제5장)
책임 강화	의원 겸직금지	겸직금지 대상 개념이 불명확, 겸직신고 내역 외부 미공개 등	겸직금지 대상의 구체화, 겸직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등 (제43조)
	지방의회 윤리심사	윤리특위 설치 임의 규정,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미규정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제65조),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등 (제66조)
	의정활동 투명성	의회 표결방법 원칙 관련 근거 미비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제74조)
	정보공개	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 미규정	의회 의정활동 등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제26조)

출처: 하혜영. (2021).

2. 위임자-대리인이론의 관점에서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 대의제 민주주의제도 하에서 통치체제는 기본적으로 주권으로부터의 위임에 따라 맡겨진 권한을 대리하는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에 놓여 있음
- 즉,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의회의 관계에서 유권자는 위임자, 의회는 대리인의 관계인 것임

- 순차적으로 의회는 유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다시 행정부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위임을 행사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역시 권한의 위임과 그것에 대한 수임(受任)의 고리(chain)로 묶여져 있다고 할 수 있음
- 즉, 의회는 유권자의 의사를 대리하여 정책을 형성하고, 그것의 집행은 전문화된 관료집단에 재차 맡기는 권한의 위임관계인 것임



[그림 II -1] 위임자-대리인 관계

- 이러한 위임자-대리인의 관점은 국민주권에 따른 국민-국회-행정부 간의 관계와 주민주권에 따른 주민-지방의회-집행부의 관계에서 논리적으로 다를 바 없음
-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자치법규와 지역정책을 결정하는 지방의회는 그것의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부에 대해 위임의 고리에 의한 법적 권한을 갖는 권위적 관계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방의회는 지방정책의 위임자이고 집행부는 대리인인 것임
- 즉,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할 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주민들의 수권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하게 되며, 이러한 입법을 통해 결정된 내용은 집행을 다시 지방정부의 집행부에게 위임하는 관계로 상정할 수 있음
- 이처럼 기본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위임자의 자격을 갖는 의회는 대리 역할을 하는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국회에서나 지방의회에서나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기능이 복잡다양해 지고 전문화·기술화되는 반면, 의회의 경우 구성원인 의원들에게 전문정보다는 각계 각층의 대표성이 우선시 되고, 또한 선거를 통해 주기적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입법 및 정책활동을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음
- 현대사회에서 의회가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행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런 연유에서임
- 위임자로서 의회는 대리인인 행정부에 대해 입법권, 예산심의권, 국정감사(지방에서는 행정사무감사권) 등 여러 제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전문화된 집행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리인인 집행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어려움
- 위임자로서 의회는 대리인인 집행부가 자기이익 추구적인 행위(self-serving behavior)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는 통제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할 때, 대리인이론의 관점에서 지방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기본가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정부관료제는 자기이익 추구적이며, 자신들의 후생함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비효율성이 존재함
 - 둘째, 위임자인 지방의회와 대리인인 집행부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의회에는 정보비용이 수반됨
- 결국, 의회와 집행부 간의 위임자-대리인관계에서 어떻게 적은 비용으로 통제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인가가 주요 문제 영역이 됨
- 이러한 이유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법제화하고 내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음
- 지방의회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법규체계와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음
- 따라서 지방의회의 자치법규체계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국회의 시스템을 살펴

봄으로써 지방의회에 불비한 제도적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3. 지방정치의 맥락과 지방의회의 위상

1) 지방정치와 지방의회

- 정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앙의 정치는 국가의 국정운영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정치라면, 지방정치는 지역의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중심으로 한 정치임
- 중앙과 지방의 정치는 이처럼 각기 담당영역이 존재하면서도, 기능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 중앙정치가 국가 전체의 시각에서 권위적인 결정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비해, 지방정치는 지역이라는 공간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초점을 둠
- 따라서 정치가 공적 가치 또는 공공재에 대한 의사결정의 과정이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지방정치란 자연히 공동체 내부의 상호작용과 정부라는 제도를 다루게 됨
- 지방정치는 자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함
 - 자치는 스스로의 자율적 규율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공동체에서 주민들이 자율권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자치가 지방정치의 근간인 것임
 -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주의론자들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지방정치일수록 민주주의에 더 가깝고 민주주의의 이상이 잘 구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임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합의제 정책결정기구로서 지방정치의 핵심기관임. 즉,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지역정책 결정, 집행부에 대한 감

시와 통제, 지역 분쟁조정 및 민원해결을 통해 지역에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러한 지방의회가 가지는 권위의 근간은 주민의사가 지방의회를 통하여 반영된다는 것에서 출발함
-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단순한 기관간의 관계가 아닌 민주주의 체제라는 보다 넓은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함
- 지방의회는 주민들 중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가 공고화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엄격한 법적 기준과 전문성에 따라 구성되는 집행부에 비하여 발전이 더딜 수 밖에 없음
- 그러나 지방자치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구조나 그 기능의 범위와는 관계 없이 지방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우리나라 헌법 역시 이 점을 선언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의회의 적절한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발전에 결정적인 요인이 됨
- 이러한 지방의회 기능의 일차적 요소는 지역주민과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2) 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

-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에 의해 선출되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대표기관임
- 따라서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지방정부에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변하고, 이를 지역의 정책에 반영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 간 각기 다른 이해를 반영하고 조정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
- 이처럼 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지방의회에 반영하는 의

미의 대표성이 지방의회의 성격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임

- 대표성 이론(theory of representation)은 주민의 의사를 입법이나 정책결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시키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 이론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원은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신장시키는 활동과정에서 대표성을 실현하는 것임
- 그런데 여기서 서로 상충되는 개별 이익들이 발생한다면, 이 상충관계를 고려하면서 지역의 공동체적 이익을 신장시켜야 하는 것이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임
- 이 과정에서 지방의원은 유권자들로부터 받았던 위임내용을 의정활동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함
- 지방의회의 대표성은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거직 공직자라고 해서 주민을 대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님
- 지역의 유권자들이 나름대로의 이유에서 각기 후보자를 지지하였지만, 매 투표 때 마다 투표 이유와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현실적으로 주민의 자치의식이 높지 않고, 지방의회에 대한 여론의 무관심, 잔존하고 있는 중앙집권적 정치 및 행정문화 등이 이러한 경향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동안 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을 공고히 하는 데에서 최대 장애요인이 되는 것은 역시 제도적 문제점에 있었음
-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정치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때문에, 지방의회의 집행부 통제능력에 제한을 가하고 있었음
- 또한 자치단체장에 비하여 열악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상호견제를 약화시키고, 의결기관에 대한 집행기관의 우위현상을 보편화시키고 있는 것이며, 여기에다 지방의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주체들의 행태적 요인까지 고려하면 지방의회의 한계는 더욱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음
- 자치단체장이 의회를 대하는 시각은 물론,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방

공무원들의 행태 등이 긍정적이지 못하게 되면 지방정책과정의 난맥상이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음

- 결국 이러한 모습이 지역주민의 태도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임
- 지방의회가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법적·제도적 기능 수행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근간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역할-기대(Role Expectation)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 요청됨
-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는 역시 지방의회가 지역정책 과정에서 주민의사를 분명하게 반영하는 것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표성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그것의 수행인 것임
- 현행 「지방자치법」은 바로 이러한 주민대표성 강화의 의미에서 개정된 것이라 할 수 있음

3) 지방의회 역할의 증대

- 지방자치가 발전할수록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전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임
- 지방사무의 증대에 따라 지방의회의 업무 증가 역시 당연한 현상임
- 이러한 지방의회의 기능적 확대현상은 선순환으로 이어져 다시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할 지방사무가 증대되고, 지방의회의 조례 및 주민복지에 대한 건의나 제안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행정수요가 다양화 되고 있다는 점은 실증적으로 나타남(박형규 외, 2019)
- 이와 같은 현상은 지방의원들에게 과다한 의정활동을 요구하게 되고 업무량을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대체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평가기준은 ① 회기 운영실적, ② 조례제·개정,

개폐 실적, ③ 의안처리 실적, ④ 예산안 심의 실적, ⑤ 집행기관 질의실적, ⑥ 행정사무감사 실적, ⑦ 청원처리 실적, ⑧ 특별위원회의운영실적 등을 들 수 있음



출처: 행정안전부. (2022).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

[그림 II-2] 자치법규 보유현황

- [그림 II-2]를 보면, 자치법규 보유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광역시의 평균 보유 수는 2017년 기준 509건, 광역도는 520건으로 나타남
- 광역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여년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평균 0.54 건에서 2017년 평균 2.47 건으로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2018). 지방자치단체 조례현황과 시사점

[그림 II-3]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

4. 지방의회의 의정역량

- 지방자치가 심화될수록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면, 그러한 역할수행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역량도 높아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한 역량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움
- 일반적으로 역량(competence)은 직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이나 조직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정의되며, 여기에는 지식, 기술, 전문성 등이 포함됨
- 개인적 차원에서 지방의원의 역량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핵심으로 함
 - 이러한 전문성은 특정 문제상황을 진단하는 통찰력과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며, 전문성은 관련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과업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직무역량을 의미함

- 그런데 지방의회역의 역량은 지방의원 개인 차원의 역량으로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역의 지원조직, 인력자원, 정책보좌기구 등으로 구성됨
 - 지방의회역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역의 구성원인 지방의원 각자의 역량 자체도 높아야 하겠지만,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응하여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역과 지방의원에 대해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정되는 여러 지원이 체계화되어야 함
- 따라서 이 세 가지 역량의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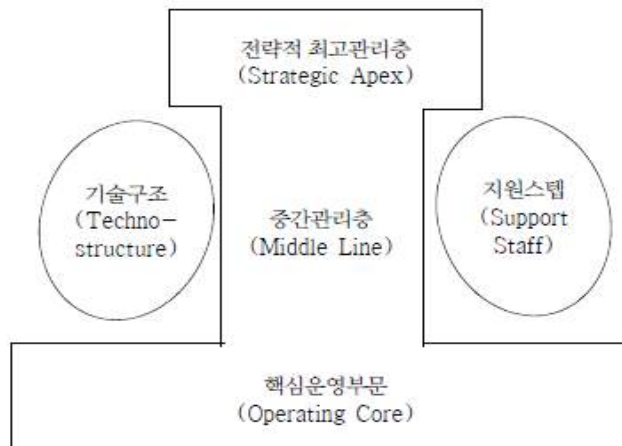
1) 지방의회 지원조직

- 지방의회역과 의원의 활동 지원은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부터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현행 법률의 시행 이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지방의회역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리기구가 설치되어 있음
-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102조에서 의회사무기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즉,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동조 제1항).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동조 제2항). 그리고 “의회사무기구에서 근무하는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동조 제3항 참조)
- “지방의회에서 사무처(事務處)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고, 의회 사무국(事務局)은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고, 실·국의 설치기준에서 “인구 10만 미만” 구간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군에 설치한다. 의회 사무과(事務課)는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군·구, 실·국의 설치기준에서 “인구 10만 미만” 구간의 기준을 적용받는 군에 설치한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준 등에 관한 규정」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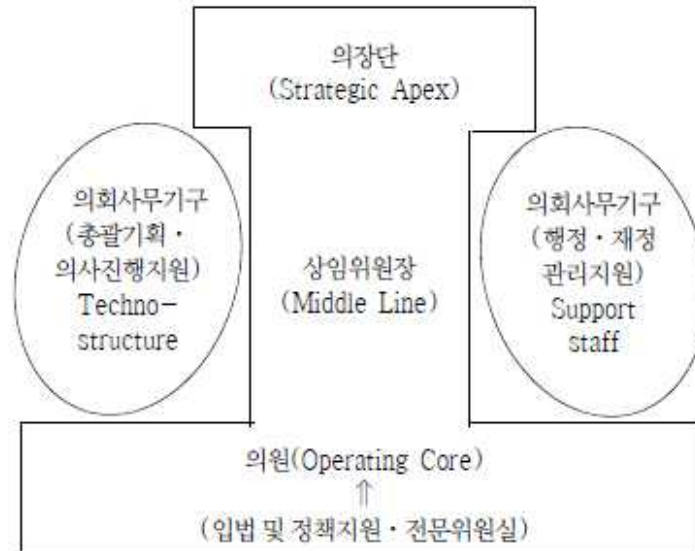
- 또한, 의회 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게 하고”(제103조 1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제103조 2항)고 명시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정치가이면서 지방행정의 전 과정을 폭넓게 다루는 일반 행정가이지 전문가(specialist)는 아님
- 복잡·다양하게 펼쳐지는 의정수요에 대응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에서 지방의원 개인에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보좌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분화된 기구의 지원이 필요한 것임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역할이 확대되고 전문적으로 분화되는 것은 의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방의회 조직의 상황적합성 확보의 차원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이해됨
-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민츠버그(Mintzberg)의 모형을 활용하여 지방의회의 조직구조를 분석해 볼 수 있음
- 민츠버그는 조직은 구조적으로 5가지의 기본요소를 갖는다고 함
- 첫째는 핵심운영부문(Operating core)인데, 조직의 기본적인 과업, 즉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서 투입-과정-산출에 직접 관련되는 지원역할을 담당함
- 둘째, 스텝(staff)의 지원을 받는 전략적 최고관리층(Strategic apex)
- 셋째, 그 하부에서 핵심운영부문과 전략적 최고관리층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관리층(Middle line)이 놓여있음
- 넷째, 조직의 표준화 및 환경적응을 지원하는 기술구조(Techno-structure)부문이 있음

-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문으로 지원스텝(Support staff) 부문은 핵심운영부문을 간접적으로 지원함
- 이상과 같은 내용을 도식화 하면 [그림 II-4]와 같다.



[그림 II-4] 민츠버그의 조직구조

- 이러한 구조적 형태를 지방의회에 적용해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의원들로 구성되는 조직화된 「추진체」와 내용·형식·절차 등의 측면에서 추진체를 통한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지원체계」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음(신원득, 2006)
- 「추진체」란 공식적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형식체(形式體)로서 여기에는 본회의(Plenary Session)와 위원회(Committee)가 있음
- 「관리지원체계」는 지방의원들로 구성되는 추진체(본회의 및 위원회)가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기능적 전문성의 측면에서 ① 행정 및 재정관리지원, ② 의사진행지원, ③ 입법 및 정책지원 등 그 기능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신원득, 2006)
- 이를 민츠버그(Mintzberg)의 구조모형에 적용해보면, 행정부에 대응한 전체로서의 의회조직은 그 구조가 다음 [그림 II-5]와 같음



[그림 II-5] 의회 지원조직의 개념도

- 첫째, 투입자원을 동원하여 산출로 전환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운영부문(Operating Core)은 지방의원들임
 - 이들은 의회의 중추적인 역할인 의안을 입안·심의·의결하는 과업을 수행함
 - 이 같은 중추적인 과업을 수행할때 국회의원은 보좌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입법지원담당관이나 전문위원실의 지원에 의존해 왔음
- 둘째, 전략적 최고관리층(Strategic Apex)은 의회조직에 대한 최고책임자와 그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스태프 등을 포함하는 부문임
 - 실제에서는 의회의 의장과 부의장, 비서실을 포함하는 의장단이 이에 해당됨
 - 이들은 의회의 주요 미션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를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자들, 즉, 집행부, 이익집단, 노동조합 등의 요구에 대응함

- 셋째, 중간관리층(Middle Line)은 조직이 확대되어 통솔범위(span of control)의 한계로 인해 필요한 부문임
 - 조직단위의 감독, 피드백 정보의 상부 보고, 조직단위의 환경여건 관리, 조직단위와 관련이 있는 다른 관리자·분석가·지원스텝·외부인 등 사이의 연락책, 조직단위의 전략 형성 등 그 역할이 소관 조직범위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전략적 최고관리층(strategic apex)과 다를 바 없이 동일한 역할을 수행함 (Mintzberg, 1979)
 -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개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넷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조직을 표준화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술구조(Technostructure)임
- 다섯째, 지원스텝부문(Support staff)은 의원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기구가 담당하는 부문임
 - 구체적으로는 총무담당관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위원실, 입법정책분석담당관, 예산·재정분석담당관은 외부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지방의원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술적 핵심부문(technical core)으로서 의원을 보좌하는 중첩적 경계부문(boundary spanning units)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 이렇게 볼 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안건을 심의하고, 강력한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적 정책분석을 통한 보좌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전문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논리가 성립함
- 또한,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정책의 결정 외에도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지역문제를 상담, 해결해야 하는 등 그 역할이 확대·강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전념하고 복잡한 주민생활문제 등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보좌기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임

2) 전문위원제

- 지방의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그리고 위원회에는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둘 수 있는데, 이를 전문위원이라고 함
- 전문위원에 관하여는 현행 지방자치법 이전에도 구 「지방자치법」제59조에 근거가 있었음
 -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동조 제2항). 그리고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동조 제3항)
- 현행 「지방자치법」 제68조26)에는 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음
 -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2항에 따라 동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 “제6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동 규정 제15조 제3항)”.

3) 의원 보좌인력

- 오랫동안 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보좌관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그동안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유급 보좌인력의 설치에 입법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례를 통하여는 유급 보좌인력을 설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해왔음
-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지방의회사무처의 소속 공무원으로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에 대한 판시임
 - 이 건에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한다고 한 위 규정에 위반되고, 나아가 조례로써 지방의회의원에 유급보좌관을 둘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같은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전혀 새로운 항목의 비용을 변칙적으로 지출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
- 이외에도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상임(특별)위원회 행정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42명에 대한 보수 예산안’을 담고 있는 2012년도 광역시 예산안을 재의결하여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위 근로자를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하지만,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위 근로자를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예산안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비교적 최근에는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40명을 ‘정지원요원’으로 임용하여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소속시킨 후 상임위원회별 입법지원요원(입법조사관)에 대한 업무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한 사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 채용공고가 법령에 위반된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안에서, “지방의회

에 위 공무원을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아닌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위 공무원의 임용은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데,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도 위 공무원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채용공고는 위법하고, 이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

- 이와 같은 논란을 해결하는 근거로서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즉,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제41조 제1항)고 규정하였음
- “다만,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한다”(부칙 제6조 참조)하였음
- 이러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제2항)
-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정책지원관은 시·도의 경우에는 6급 이하로, 시·군·구의 경우에는 7급 이하로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참조). “이때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동조 제6항 참조)
-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참조)
- 「지방자치법」제4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제48조는 서류제

출 요구를, 제49조는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제50조는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를, 제51조는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을, 제52조는 의회규칙을, 그리고 제83조는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종합하면,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에 포함되는 업무의 대부분에 대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음(제2항)
- 이와 같이 정책지원관이 담당하는 직무사항을 법령에 일일이 열거한 것은 열거한 직무 외의 개인보좌관화와 사적 사무 지원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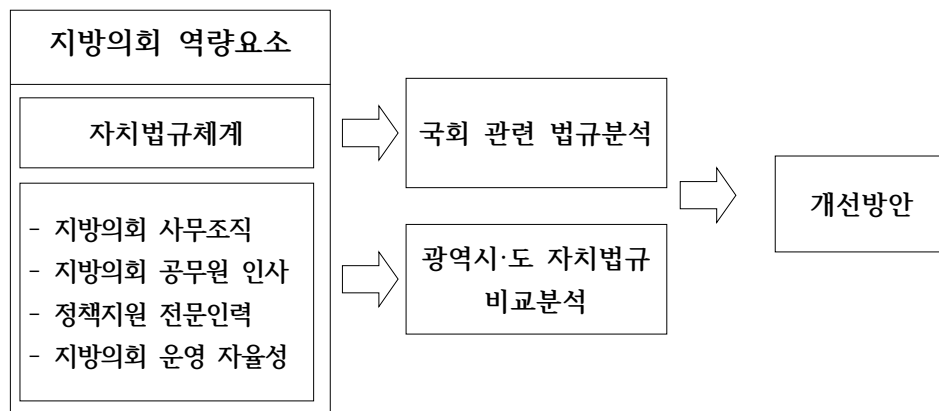
5. 지방의회 역량과 지방의회 자치법규 체계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개인 역량이 증진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지방의회 지원시스템의 효능 역시 높아야 하며, 이러한 지원시스템은 결국 제도적 차원에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임
-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는 기본적인 속성상 민주적이면서 효율적인 의회운동을 위하여 합리적인 자치법규체계를 정립하여야 함
- 조례와 조례 간 관계, 조례와 규칙 간 관계 등 정연한 자치법규 체계가 요구되는 것임
- 선행연구에서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관한 논의에서 이관행(2020)은 의회 사무기구의 자치조직권의 강화를 주장하였고, 김홍주 외(2022) 역시 의회사무처 조직체계 정비를 강조하였음
- 경기도의회(2022)에서는 의회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조성수(2022)는 의회공무원의 의회직렬 신설을 주장하였음
- 최근에 들어서는 지방의회의 교섭단체에 주목하여 최용전(2022)은 교섭단체

운영 활성화를 주장하기도 함

- 또한 강장석(2008)은 지방의회의 자율성·독립성의 확보를 주장하였고, 정기용(2023)은 기존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음
- 이러한 지방의회역량 강화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 이진수(2022)는 의회사무처 조직, 전문위원, 정책지원전문인력, 지방의회 인사권 자율성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종합하면, 지방의회 역량 강화하고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함
-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지방의회 지원조직의 체계, 의회공무원 인사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활용의 효율화,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가 포함됨
- 그런데 이와 같은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 자치법규(조례, 규칙, 규정, 지침 등)가 정비될 필요성이 있는 것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역량의 구성요소로서 지방의회 사무조직, 지방의회 공무원 인사, 정책지원 전문인력(전문위원 및 정책지원관), 지방의회 운영 자율성을 설정하고, 이에 관한 지방의회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미비점이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이러한 연구에서 먼저 국회의 국회 관련 법규체계를 살펴보면서 의회기관이라는 공통점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물론 국회는 지방의회에 비해 법체계상 상위수준이지만, 대표기관인 의회로서의 기능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에 규범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됨
- 이와 아울러 17개 광역 시·도의 지방의회 자치법규를 비교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함

- 대부분의 광역시·도의 자치법규체계는 대동소이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시·도의 규모나 특성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 이 경우 왜 차이가 나는지 경북도의회에서도 적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한 분석틀은 아래 [그림 Ⅱ- 3]과 같이 나타남



[그림 Ⅱ- 6] 분석 틀

Ⅲ. 국회-지방의회 관련 법규체계 비교분석

1. 국회 관련 법체계

- 우리나라의 국회는 「국회법」 및 개별 법률과 국회관련 법규 등에 따라 국회의 소관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과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음
- 「국회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국회사무처법」에 근거하여 국회의 활동 및 행정사무를 처리를 담당하는 국회사무처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국회예산정책처법」에 따라서 국회의 예산 관련 정책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예산정책처를 두고 있으며, 「국회도서관법」에 의해 국회의 입법자료를 지원·관리하는 국회도서관을 설치·운영함
-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법」에 따라 국회의 입법활동과 정책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직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을 두고, 교섭단체 소속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등을 수행함

1) 국회 관련법률

- 국회와 관련된 법률은 총 12건이며, 이 중 「국회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지원 조직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사무처법」, 「국회도서관법」, 「국회미래연구원법」,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국회사무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과 같이 7건이 있고, 국회의원 보좌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1건이 있으며,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3건이 있음

<표 Ⅲ-1> 국회 관련 법률 종류

구분	법률명
국회 기본법	국회법
국회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국회사무처법
	국회도서관법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미래연구원법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국회사무처리에 관한 특례법
국회의원 보좌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 권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2) 국회 관련 법규

-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64조)고 하여 국회에 규칙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음
- 이는 국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회에는 자율적 운영을 위한 규정, 내규, 지침, 강령, 예규 규약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법규가 있음
- 현재 국회에는 총 413개의 국회 관련 법규가 있으며, 이 중 규칙이 39건, 규정이 94건, 내규가 127건, 지침 149건, 준칙 1건, 강령, 규약 1건, 예규 1건

으로 구성됨

<표 Ⅲ-2> 국회 관련법규의 종류 및 건수

구분	규칙	규정	내규	지침	강령	규약	예규	준칙	총계
건수	39	94	127	149	1	1	1	1	413

(1) 국회 규칙

-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64조)고 함으로써 국회에 내부운영에 관하여 규칙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음
- 국회의 규칙제정권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보장된 국회 자율권의 핵심적인 수단임
- 따라서 국회 규칙은 의회운영의 독립성, 민주성, 효율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함
 - 국회 규칙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정당 간의 갈등이 클 때, 스스로 갈등을 조정하거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부 및 다른 기관이 국회운영에 관여할 가능성(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이 있으며, 이는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하여 국회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음
 - 또한 국회 규칙의 제도화 수준이 높을수록 다수당의 다수결 처리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음

<표 Ⅲ-3> 국회 규칙의 유형

구분	규칙명	위임법률
조 직 설 치 구	국회상설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칙	국회법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국회예산정책처장 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직선거법

성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국회법
	국회사무처 직제	국회사무처법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행정심판법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도서관 직제	국회도서관법
	국회에산정책처 직제	국회에산정책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운영등에관한 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 무 원 인 사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국회법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칙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법률
	국회인사규칙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의 구분변경에따른국회공무원의전직임용등에관한특례규칙	국가공무원법
	전문위원 임용자격에 관한 규칙	국회사무처법
국 회 운 영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국회에서의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칙	국회법
	국회청원심사규칙	국회법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국회사무처법
	국회세종지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법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국회법
	의회지도자상 건립 등에 관한 규칙	없음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정보공개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국회법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국회법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도서관법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없음
	국회방청규칙	없음
윤 리	국회공무원행동강령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공직자윤리법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없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국회법

- 국회 규칙은 소수파의 의견도 충분히 개진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의회운영의 민주성이 확보할 수 있음
- 국회 규칙은 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의회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의회운영의 효율성이 확보는 방향으로 기능하여야 함
 - 국회 규칙은 국회의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복지 향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의사 및 내부 사안을 규율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기능이 있음
- 이와 같은 국회의 규칙은 2024년 1월 현재 총 39건이 있는데,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11건, 국회공무원 인사 관련 5건, 국회 운영 관련 17건, 윤리 관련 6건임

(2) 국회의 규정

- 국회에는 규칙 이외에도 국회의 조직, 권한 및 운영에 관하여 하위법규로서 국회규정, 내규 및 지침이 있음
- 국회 규칙은 헌법 제64조 제1항의 국회 규칙 제정권으로부터 도출된 것이지만, 규정은 「국회사무관리규정」 제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 “규정은 의장이 법률이나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 법률 및 규칙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직권으로 소관사무에 관하여 정한 법규”라고 함
 - 이와 같이 「국회사무관리규정」은 규정을 위임명령 또는 집행명령과 같이 법규 명령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음

<표 III-4> 국회 규정의 종류

구분	관련 규정
국회의원 활동 관련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국회의원신분증규정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규정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국회의원 입법활동 차량비 지급규정 비위 국회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
위원회 등 설치·운영	국회방송자문위원회규정 국회세종 의사당건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위원추천 법인·단체의 범위에 관한 규정 국회의장자문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회 증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회직무파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회활동지원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위원회 공무원 직무에 관한 규정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국회공무원 인사관련	국회 5급공무원 승진심사규정 국회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회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국회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정 국회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정 국회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국회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국회공무원 복무규정 국회공무원 복제규정 국회공무원수당규정 국회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공무원증 규정 국회공무원 평정규정 국회 국어책임관 운영 규정 국회모범공무원 규정 국회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국회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국회승진심사규정 국회연수에 관한 규정

	국회인사교류규정 국회인사사무감사 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국회 출산격려금 지급 규정 국회 포상금 지급규정 국회표창규정 수석전문위원의복무에관한규정 신규채용자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법률위임 사항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정 국회입법조사처법 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정 등의 정비 에 관한 규정
국회운영 관련	국회 간행물 디자인 관리 규정 국회 공간문화 개선 등에 관한 규정 국회공보에 관한 규정 국회교통관리규정 국회기록물관리규정 국회방송에 관한 규정 국회의 기념일에 관한 규정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국회장에 관한 규정 국회 사무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회청사관리규정 국회 안전관리 규정 국회 커뮤니케이션마크 등의 사용에 관한 규정 국회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회 후원명칭 관리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운영에 관한 규정 디지털플랫폼국회에 관한 규정 국회온라인미디어 운영규정 의원회관관리규정 국회 영상자료 제공 및 인터넷 중계방송에 관한 규정
사무처리 정보관리	국회도서관 위임전결규정 국회보안업무규정 국회사무관리규정 국회 소속기관 간의 업무협의를 등에 관한 규정

	국회소속기관 예산집행사무점검에 관한 규정 국회입법조사처 위임전결규정 국회예산정책처위임전결규정 국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국회회의록 발간·보존 등에 관한 규정 법률안 입안·검토 업무의 처리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의안의 접수 및 회부 등에 관한 규정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작성 및 배부에 관한 규정 조사·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회답업무 처리 규정 직무대리규정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징계·소청 및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 채권관리관·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입법의 분석·평가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헌법기관의 입법의견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국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국회제안규정 국회청원심사규정 국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국회정보공개규정
--	--

2. 국회-지방의회 관련법규 비교

1)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비교

-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법률을 제·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국회의 운영에 관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스스로 정할 수 있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이에 비하여 지방의회 역시 입법기관으로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지만, 법체계상 하위에 속하기 때문에 법령에 구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의 수준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의 지방의회 관련 조항들에서 살펴보아야 함

- 법률 수준에서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비교해 보면, 「국회법」에서는 지원조직으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 설치 근거를 밝히고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교섭단체와 정책연구위원, 위원회의 전문위원 및 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에서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를 새로 규정하였고, 전문위원의 활용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무처 설치와 직원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고 있는 정도임

<표 III-5> 「국회법」- 「지방자치법(지방의회)」 비교

구분	국회법	지방자치법
목적	국회의 <u>조직·의사(議事)</u>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
	총칙 국회의 회기와 휴회 국회의 기관과 경비 의원 <u>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u> 회의 회의록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 청원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탄핵소추 사직·퇴직·결원과 자격심사 질서와 경호 징계 국회 회의 방해금지 보칙	제5장 지방의회 조직 지방의회 의원 권한 소집과 회기 의장과 부의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 회의 청원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질서 사무기구와 직원 총 68개 조

	총 16장 169조	
법률 또는 조례 에 위임	-기관구성 및 조직 • 국회사무처 • 국회도서관 •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입법조사처 -국회활동 • 국정감사 및 조사 • 인사청문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 국회의원 보좌관 수당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	의정활동비, 월정 수당, 여비 지방의원 직무관련 영리행위 범위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지방의회 의결사항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정례회 운영 임시회 요구 의원 수 연간 회의 일수 교섭단체 구성 정당 의원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표 Ⅲ-6> 국회법의 국회 규칙 위임사항

- 국회세종이사당의 설치와 운영
-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 이해충돌의 신고
-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定數)
-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 공무원, 운영 지원
-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소위원회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
- 전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정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
- 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청원서 국민의 동의 방법·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 전자청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청원 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방송에 관한 절차·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표 Ⅲ-7> 지방자치법의 규칙위임사항

- 의회규칙
 -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
 - 지방의회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
- 회의규칙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표결방법
 -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
 - 질서유지
 - 방청인 단속에 필요한 사항
 -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 의회규칙은 의회의 자율권을 위하여 제정되는 의회 내부의 규범임

-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면, 의회 내부의 사항에 관하여 무엇이든 정할 수 있음
- 여기서 ‘내부운영’이란 의회의 소속 직원에 대한 관계 또는 의회행정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회의규칙

- 지방자치법 제83조에 근거
- 여기서 ‘회의의 운영’이란 본회의, 임시회 등의 회의를 개최하고 진행하는 것

과 관련된 사항을 의미

-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의 제정권자는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지방의회
- 회의규칙의 제·개정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요함

<표 III-8> 회의규칙과 규칙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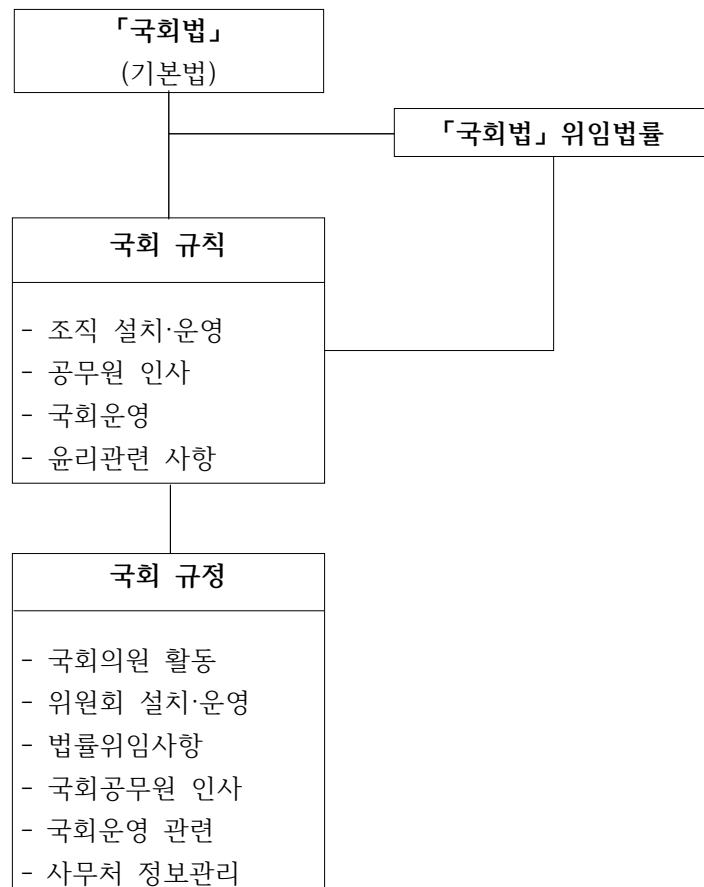
구분		회의규칙	규칙
제정권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83조	「지방자치법」 제29조
법 적 효 력	형식적 효력	법령의 하위, 조례와 동일 효 력	조례의 하위효력
	지역적 효력	의회 내	원칙적으로 관할구역 내
제·개정 절차		의원(5분의1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발의→의결(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 성)→발령(의회의장)	방침결정→규칙안 심사(법무관 실)→조례규칙심의회 심의→지 방자치단체장 결재→사전보고 (행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 공포

출처: 행정안전부. (2022).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

2) 국회법규체계

-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운영의 독립성·자율성, 민주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관련 법규체계를 갖추고 있음
- 「국회법」을 기본법으로 두고, 주요 법률사항들을 법률에 위임함과 동시에 시행과 관계되는 사항들을 헌법이 규정하는 법규명령의 성격을 띤 국회 규칙, 국회 규정에 순차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법규의 수직적·수평적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이는 국가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효성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규정사항들을 제도

의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의미를 가짐



[그림 Ⅲ-1] 국회 법규체계

3) 지방의회 기본 조례의 필요성

- 의회 기본조례란 의회의 기본적 사항을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한 의회운영의 최고규범을 의미함
- 현행 의회 자치법규체계에서는 「국회법」과 같이 의회 자치법규의 기본을 정하

고 전체 법규체계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지방의회법」이 부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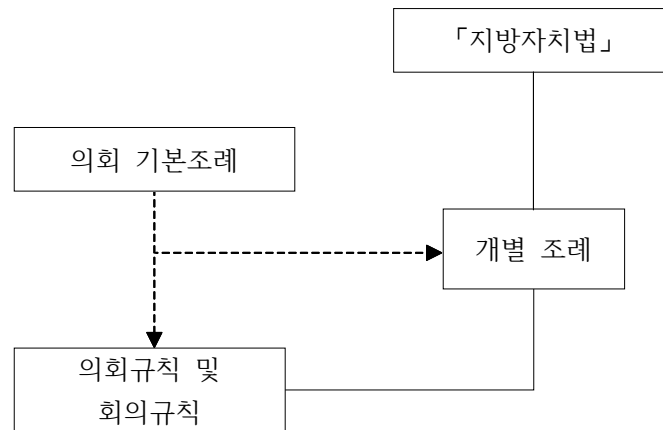
- 「지방의회법」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지방자치법」에서 별도의 장을 두어 지방의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뿐임

○ 지방의회 기본조례의 필요성

- 의회 기본원칙, 방침, 기본사항 등 지방의회의 기본 틀을 정하여 전체 의회 자치법규의 방향성과 정합성을 선도할 최고규범이 필요함
- 지방의회 기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의회와 관련된 기본적 사항을 규범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체제에서도 제정할 수 있음
- 부정적 시각에서는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입각하여 타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정의 필요성이 없으며, 굳이 제정한다 하더라도 타 조례에 비해 법형식상의 우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함
- 그러나 기본 조례를 둬으로써 타조례에 대하여 상징적·선언적 의미에서 우위를 가질 필요가 있음
- 주민의 입장에서는 산재되어 있는 조례보다는 기본에 대하여 하나로 통합된 조례를 제시하는 것이 알기 쉬움

○ 지방의회 기본 조례의 기능

- 기본 조례를 통하여 ‘제도화 수준’이 높을수록 정당 간 대립문제나, 다수 대 소수파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음
- 지방의회 운영의 독립성 확보
- 지방의회 운영의 민주성, 효율성 확보



[그림 III-2] 의회 기본 조례 하의 자치법규체계

3. 시사점

1) 국회 관련법규체계의 특성

-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법률을 제·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국회의 운영에 관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스스로 정할 수 있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국회의 규칙제정권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보장된 국회 자율권의 핵심적인 수단임
- 국회 규정은 「국회사무관리규정」 제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위임명령 또는 집행명령과 같이 법규명령적 성격을 띠고 있음
- 「국회법」을 기본법으로하여 국회 관련 법률과 함께 규칙과 국회 규정에 위임함으로써 국민 대표기관이라는 위상을 정립하고, 수직적·수평적 체계화를 갖추고 있음

2) 지방의회 자치법규체계의 특성

- 지방의회 역시 입법기관으로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지만, 법체계상 하위에 속하기 때문에 법령에 구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의 수준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의 지방의회 관련 조항들에서 살펴보아야 함
- 기본법인 「국회법」에서 국회의 회기와 휴회, 국회의 기관과 경비, 의원,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회의, 회의록,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 청원,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탄핵소추, 사직·퇴직·결원과 자격심사, 질서와 경호, 징계, 국회 회의 방해금지까지 총 169조 부칙 2조를 포함하여 회의체로서 국회의 기본적인 사항을 망라하고 있음
- 이에 반하여 「지방자치법」은 다수의 많은 항목에 대해 조례, 의회규칙 및 회의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조례가 산재되는 결과를 가져와 전체적인 정합성이 취약할 수 있음

3)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기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지방자치법」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법」과 같이 지방의회와 관련된 기본적 사항을 규범화할 필요가 있음
- 기본 조례는 타조례에 대하여 상징적·선언적으로 기본이 된다는 의미가 있음
- 주민의 입장에서 산재되어 있는 조례보다는 기본에 대하여 하나로 통합된 조례를 제시하는 것이 알기 쉽다는 장점이 있음
- 지방의회 기본 조례를 통하여 ‘제도적 수준’을 높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운영의 독립성, 민주성,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IV. 광역시도의회 자치법규 비교분석

1. 광역시도의회 자치법규체계: 기본 조례

○ 광역자치단체의회의 기본 조례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표 IV-1> 광역자치단체 의회 기본조례 요약표

지역	규칙	제정일
①경상북도의회	없음	
②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2013. 1.10
③부산광역시의회	없음	
④대구광역시의회	없음	
⑤인천광역시의회	없음	
⑥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2014. 6.30
⑦대전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2021. 5.11
⑧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2022. 4. 7
⑨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없음	
⑩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2016. 1. 4
⑪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2017. 6.16
⑫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2020. 7.10
⑬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	2013. 7. 3
⑭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2016. 1.29
⑮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기본 조례	2016. 5.16
⑯경상남도의회	없음	
⑰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없음	

1) 지방의회 기본 조례 현황

1.1 광역의회별 의회 기본 조례-1				
	광역자치단체 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목적	시민에게 열려있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			
기본 이념	①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u>지위를 확인</u> ②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u>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u> 을 확립	①, ② 동일	①, ② 동일 ③민주·인권·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차별과 소외 없는 공동체 정신을 실현	①, ② 동일
구성	목적, 기본이념, 의정활동원칙, 회의운영 관련사항 의장, 부의장, 사무처, 정책연구위원회, 의원 자격 교섭단체 구성, 위원회, 전문위원 및 공무원, 전문가 활용 공청회, 입법법률고문, 시장의 출석요구,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의회의 예산, 산하기관장 검증 회의록, 경호 회의 질서유지, 방청,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총 64조 (장 구분 없음)	① 총칙 ② 회의운영 ③ 의회의 기관 ④ 의원 ⑤ 위원회 ⑥ 의안의 발의 및 시장,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답변 ⑦ 질서 및 경호 총 7장 50조	① 총칙 ② 의원 ③ 회의운영 ④ 의회의 기관 ⑤ 교섭단체 및 위원회 ⑥ 발언 ⑦ 시장 등의 출석·답변 ⑧ 질서와 경호 ⑨ 의원 연구활동 및 시민참여 총 9장 66조	① 총칙 ② 회의운영 ③ 교섭단체 ④ 위원회와 위원 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총 5장 38조
특기 사항	최초 기본 조례는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추9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에 따라 무효			

1.2 광역의회별 의회 기본 조례-2			
	광역자치단체 의회		
	경기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라남도의회
목적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이념	① 정책 입안 과정에서 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반영 ②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자치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③ 그 밖에 도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정책과제 실현 등	① ② ③ 동일	
구성	①총칙 ②도민 ③의회 ④의원 ⑤의회와 도지사의 관계 총5장 20조	① ② ③ ④동일 ⑤의회와 도지사·교육감의 관계 총5장 16조	① ② ③ ④ ⑤ 동일 총5장 19조
특기사항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할 것을 규정함	좌동	좌동

1.3 광역의회별 의회 기본 조례-3			
	광역자치단체 의회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목적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기본원칙 또는 이념	① 도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다양한 도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도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함 ②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③ 의회는 도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 고 도의회사무처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함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도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도민의 의견 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	
구성	①총칙 ②회의운영 ③의회의 기관 등 ④의원 ⑤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⑥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답변 ⑦경호 총7장 56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동일 총7장 57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동일 총7장 54조
특기사항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할 것을 규정함	좌동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하 고 전라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위임

2) 지방의회 기본 조례 비교결과

- 경기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라남도의회와 같은 일부 광역도의회에서는 기본 조례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지방의회의 이념과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정도임
- 반면 서울특별시의회와 대전, 광주, 울산광역시의회, 그리고,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의회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재정립하고 개별 조례에 위임하는 형식을 갖추으로써 지방의회 기본 조례의 위상을 갖추게 하고, 여러 자치조례와 규칙을 체계화하고 있음

2. 지방의회 사무조직 관련 조례

- 아래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정역량 관련사항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와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함께 살펴보기로 함

1) 의회사무처 설치조례와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의 의의

- 의회의 사무처, 사무처장,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 등을 규정함
-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103조, 104조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제주도의 경우 이에 더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및 제44조에 근거함
- 정책지원관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임

○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은 「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됨

「지방자치법」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시·도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지방자치법」 제68조(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1항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제48조(서류제출 요구)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제52조(의회규칙)

제83조(회의규칙)

<표 IV-2> 광역자치단체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요약표

지역	조례	규칙	비고
①경상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②서울특별시의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서울특별시의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
③부산광역시의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④대구광역시의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사무처 직무대리 규칙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⑤인천광역시의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기구 및	

	직원 정수 조례	사무분장 규칙	
⑥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⑦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⑧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⑨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⑩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사무처 설치조례 시행규칙	
⑪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⑫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⑬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⑭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⑮전라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⑯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경상남도의회 정책 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⑰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2) 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와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비교표

2.2.1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광역의회별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1			
	광역자치단체 의회		
	경상북도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조례/ 규 칙 명칭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 수 조례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 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사무처 직제 규칙	-의회사무처설치조례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사 무 처장	-직급: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직급:지방이사관	-직급:지방관리관 -개방형직위
사 무 처 조 직 담 당 관 및 직급	-직급:지방서기관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의정홍보담당관 -예산입법담당관 -정책지원담당관(개방형직 위)	-직급:지방서기관 -기획인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입법재정담당관 -정책지원담당관	-직급:지방서기관 -의정정책관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분석담당관
전 문 위 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기획경제전문위원(개방형 직위)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 (개방형직위) -문화환경전문위원 -농수산전문위원 -건설소방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기획경제전문위원 -행정문화전문위원 -복지환경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특별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문화복지전문위원 -경제환경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예산결산전문위원
정책 지원 관	-소속: 사무처 또는 위원 회	-명칭: 정책지원전문인력 -소속: 사무처 등 -지휘: 의원 및 소속부서장	-소속: 사무처 또는 위 원회
기타		-지방자치법 제102조 103 조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4 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함. 이외의 전문위원은 지방서 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 직공무원으로 보함	지방자치법 제102조~ 104조 개방형직위는 지방임기 제공무원으로 보임 가 능

2.2.1.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광역의회별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2	
	광역자치단체 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조례/규칙 명칭	-의회사무처설치조례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사무처장	-직급:지방관리관 -개방형직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임 가능
사무처 조직 담당관 및 직급	-직급:지방서기관 -의정담당관 -언론홍보실장 -의사담당관 -법제담당관(개방형직위) -재정분석담당관 -정책지원담당관 -인사담당관
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환경수자원전문위원 -보건복지전문위원 -주택공간전문위원 -교통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기획경제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 -도시계획균형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일반임기제 6급 -소속: 사무처, 의원실 근무 가능 지휘·감독: 의원
기타	-사무처에 교육협력관실 설치 -기본조례 -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위원의 개방형직위 지정·운영(---분장규칙 제34조4항 관련 별표) 전문위원(4급): 운영, 행정자치, 기획경제, 환경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도시안전건설, 주택공간, 도시계획균형, 교통, 교육, 예산결산특별

2.2.1.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광역의회별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3

	광역자치단체 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조례 / 규칙 명칭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사무처 직제 규칙
사무처장	-직급: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직급: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직급: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사무처 조직 담당관 및 직급	-직급:지방서기관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직급:지방서기관 -의정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입법조사담당관 (개방형직위)	-직급:지방서기관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문화복지전문위원 -경제환경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예산결산전문위원	-운영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개방형직위) -산업건설전문위원 -교육문화전문위원 -특별전문위원 (개방형직위)	-운영·행정자치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지방별정직 공무원) -복지환경·산업건설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4급 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 -예산결산(지방서기관) -교육수석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소속: 위원회	-소속: 위원회	-소속: 사무처 또는 위원회 제4조2항에서 근거조항만 제시
기타	목적: 지방자치법 제102조 103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지방자치법 제102조 103조 -특별전문위원은 예산분 석업무담당	목적: 지방자치법 제102조 103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2.2.1.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광역의회별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4			
	광역자치단체 의회		
	울산광역시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기도의회
조례/규칙 명칭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사무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사무처 설치 조례 -사무처설치조례 시행규칙
사무처장	-직급: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직급: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직급: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개방형직위
사무처조직 담당관 및 직급	-직급:지방서기관 -의정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입법담당관(개방형직위)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직급: 의정담당관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의사입법담당관은 지방서기관	-직급:지방서기관 -총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도민권익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특별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교육안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기획재정전문위원 -경제노동전문위원 -안전행정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 -농정해양전문위원 -보건복지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 -교육기획전문위원 -교육행정전문위원 -특별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소속: 사무처 및 위원회 -지휘감독: 의원과 처장	-소속: 사무처	-소속: 사무처 -지휘감독: 의원과 처장
기타	지방자치법 제102조~104조	목적: 지방자치법 제102조 103조	지방자치법 제102조~ 104조6담당관, 13전문위원실, 371명(20230303 기준)

2.2.1.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광역의회별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5			
	광역자치단체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충청북도의의회	충청남도의의회
조례/ 규칙 명칭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 장 규칙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 칙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 칙
사 무 처 장	-직급: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직급: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직급: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사 무 처 조 직 담 당 관 및 직급	-직급:지방서기관 -의정관 -의사관 -홍보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총무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홍보담당관	-총무·홍보·의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 -입법정책·예산정책담당 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임기제 공무 원으로 임명
전 문 위 원	-운영예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안전건설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책복지전문위원 -행정문화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경설환경소방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기획경제전문위원 -행정문화전문위원 -복지환경전문위원 -농수산해양전문위원 -건설소방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정책 지 원 관	-소속: 사무처 및 위원회 -지휘감독: 의원과 처장	-소속: 상임위원회 -지휘감독: 상임위원장과 처장	-소속: 위원회 -지휘감독: 의원과 처장
기타	목적: 지방자치법 제102 조 103조, 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목적: 지방자치법 제102 조 103조, 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1`처 3담당관실 9팀, 6 전문위원실	목적: 지방자치법 제102 조 103조

2.2.1.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광역의회별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6			
	광역자치단체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전라남도의의회	경상남도의의회
조례/ 규칙 명칭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 수 조례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사무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사 무 처 장	-직급: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직급: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직급: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사 무 처 조 직 담 당 관 및 직급	-직급:지방이사관 또는 지 방부이사관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의정홍보담당관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정책담당관 -홍보담당관 -	-직급: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입법담당관
전 문 위 원	-운영수석전문위원 (개방형직위)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보건복지환경전문위원 -경제관광문화전문위원 -안전건설소방전문위원 -농수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특별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농해양수산전문위원 -경제환경전문위원 -건설소방전문위원 -문화복지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정 책 지 원 관	-소속: 사무처 및 위원회 -지휘감독: 의원과 처장	-소속: 위원회 -지휘감독: 의원과 처장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처 -「 경상남도의회 정책지 원관 운영·관리 조례 」 -관리책임: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기 타	목적: 지방자치법 제102 조 103조	목적: 지방자치법 제102 조 103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 제29조의3	목적: 지방자치법 제102 조 103조

2.2.1.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광역의회별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7	
	광역자치단체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례 / 규칙 명칭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사무처장	-직급: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사무처 조 직 담당관 및 직급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지원담당관 -공보관(개방형직위)
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개방형직위)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환경도시전문위원(개방형직위)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개방형직위)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개방형직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개방형직위)
정책지원관	-소속: 위원회 -지휘감독: 전문위원 -「지방자치법」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둠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함 -정책연구위원 관련사항은 「제주특별법」 제39조에 근거함
기타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법 제102조 103조

3) 의회사무처 설치조례와 광역의회별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비교결과

- 대구광역시 의회, 서울특별시 의회, 경기도 의회는 사무처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17개 광역자치단체 의회 중 정책지원관에 관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한 곳은 2 곳임

-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
- 조례나 규칙에 정책지원관의 업무와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음. 이로 인해 전문위원이나 기존의 지원 전문인력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정책지원관의 소속을 위원회로 하는 경우 전문위원의 지시를 받게 되어 조례의 성안자와 검토자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함
 - 정책지원관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교육훈련, 업무수행, 그리고 평가를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전문위원은 전문보직경로를 설정하여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회사무처의 경우 정치와 행정, 사회와 문화, 그리고 경제와 산업으로 전문보직경로를 설정하고 있음(경상북도의회의 현황과 국회사무처의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의회 공무원 인사 관련

1) 광역자치단체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1) 의회공무원 인사규칙의 의의

- 소속 공무원의 시험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속 공무원의 시험·임용·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름
-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근거함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시행규칙)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설치)

<표 IV-3> 광역자치단체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요약표

지역	규칙	비고
①경상북도의회	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②서울특별시의회	의회 인사규칙	
③부산광역시의회	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④대구광역시의회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⑤인천광역시의회	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⑥광주광역시의회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⑦대전광역시의회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⑧울산광역시의회	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⑨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⑩경기도의회	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⑪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⑫충청북도의회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⑬충청남도의회	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⑭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⑮전라남도의회	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⑯경상남도의회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⑰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규칙 비교표

3. 1. 광역의회별 공무원 인사규칙 현황-1					
	광역자치단체 의회				
	경상북도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목적	소속 공무원의 시험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적용범위	소속 공무원의 시험·임용·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름				
구성	본문은 3장 31조 제1장 총칙 제2장 시험 제3장 임용	본문은 4장 57조 제1장 총칙 제2장 시험 제3장 임용	본문은 3장 31조 제1장 총칙 제2장 시험 제3장 임용	본문은 3장 33조 제1장 총칙 제2장 시험 제3장 임용	본문은 4장 30조로 제1장 총칙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장 시험 제4장 임용 등
특기 사항	제30조(전문직위의 지정·운영) 전문직위와 전문관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지정하고, 경력평정에서 일정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함	제3장 제5절 전문보직관리제 제41조(전문직위와 전문관 운영) 제42조(분야별 보직관리) 제6절 민간근무휴직제도 제43조(민간기업 등의 신청서류) 제44조(민간기업 등의 신청제한) 제46조(채용계약의 체결) 제8절 다면평가 제57조(다면평가 실시)	-	제6조(전문직위와 전문관 운영) 제7조(다면평가) 제32조(인사교류)	-

3. 1. 광역의회별 공무원 인사규칙 현황-2						
	광역자치단체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적	소속 공무원의 시험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적용범위	소속 공무원의 시험·임용·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름					
구성	본문은 3장 31조 제1장 총칙 제2장 시험 제3장 임용	좌동	본문은 3장 32조 제1장 총칙 제2장 시험 제3장 임용	본문은 3장 30조 제1장 총칙 제2장 시험 제3장 임용	본문은 5장 36조 제1장 총칙 제2장 인사기관 제3장 인사관리 제4장 성과관리 제5장 전문인력 등 기타제도 운영	본문은 3장 29조 제1장 총칙 제2장 시험 제3장 임용
특기 사항	제28조(인사교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주광역시 및 다른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음	-	-	제28조(집행부 등과 인사교류)	제4장 성과관리 제30조(역량평가제의 운영) 제31조(다면평가의 실시) 제5장 전문인력 등 기타제도 운영 제36조(정책지원관)	

3. 1. 광역의회별 공무원 인사규칙 현황-3						
	광역자치단체 의회					
	충청북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목적	소속 공무원의 시험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적용범위	소속 공무원의 시험·임용·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름					
구성	본문은 3장 29조 제1장 총칙 제2장 시험 제3장 임용	좌동	본문은 3장 30조 제1장 총칙 제2장 시험 제3장 임용	본문은 3장 31조 제1장 총칙 제2장 시험 제3장 임용	좌동	좌동
특기 사항	-	-	-	-	제28조(다면평가)	제30조(다면평가)

(3) 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비교결과

- 일부 광역의회에서 ‘다면평가제’를 활용한 평가를 강조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의회에서는 공무원이 민간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식견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함
- 경기도의회의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훈령)을 별도로 두어 의회공무원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보직관리 규정을 두고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하게 함

2) 광역자치단체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1) 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의 의의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광역도의회와 집행기관 및 자치구, 시,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됨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인사교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인사교류)

<표 IV-4> 광역자치단체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요약표

지역	규칙	비고
①경상북도의회	의회 공무원 인사교류규칙	
②서울특별시의회	미제정	의회 인사규칙에서 “민간근무휴직제”를 규정함
③부산광역시의회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④대구광역시의회	미제정	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제32에 인사교류 관련 사항을 규정함
⑤인천광역시의회	미제정	
⑥광주광역시의회	미제정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8조에 인사교류 관련 사항을 규정함

⑦대전광역시의회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⑧울산광역시의회	미제정	
⑨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제정	
⑩경기도의회	미제정	
⑪강원특별자치도의회	미제정	
⑫충청북도의회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⑬충청남도의회	미제정	
⑭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⑮전라남도의회	의회 공무원 인사교류규칙	
⑯경상남도의회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⑰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제정	

(2) 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비교표

3. 2. 광역의회별 공무원 인사교류규칙 현황-1							
	광역자치단체 의회						
	경상북도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충청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목적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적용범위	경 상 북 도 의 회 와 시·군, 시·군의회 소속의 공무원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 및 구·군의회 소속의 지방공무원	대전광역시의회와 집행기관 및 자치 구 소속 공무원	충청북도의회 및 충청북도, 시·군 및 시·군 의회 소 속 지방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및 전북특별자치도 와 시·군의회(시· 군 포함) 소속의 지 방공무원	전라남도의회와 전라남도 및 시·군 의회 소속의 지방 공무원	경상남도의회와 시·군의회 소속의 지방공무원
구성과 내용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 및 위원장의 역할 -인사교류의 절차: 계획수립과 수요조사 그리고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교류공무원의 인사관리						
특기 사항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민간부문과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3장 제6절 민간근무휴직제도 제43조(민간기업 등의 신청서류), 제44조(민간기업 등의 신청제한), 제46조(채용계약의 체결)						

(3) 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비교결과

- 17개 광역자치단체 의회 중 7개 의회만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게 구성되어 있음
- 대구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는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하나의 조문으로 인사교류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4. 정책역량 지원 관련 조례

1) 광역자치단체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1)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의 의의

-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하여 효율적인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표 IV-5> 광역자치단체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요약표

지역	조례	비고
①경상북도의회	고문변호사운영조례	1999. 7. 12.
②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③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운영조례	별도의 법률고문조례를 두고 있음
④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	
⑤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⑥광주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⑦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⑧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⑨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조례	
⑩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⑪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⑫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규칙	
⑬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⑭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⑮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⑯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⑰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2)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비교표

4. 1. 광역의회별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현황-1					
	광역자치단체 의회				
	경상북도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목적 직무	-의안의 법률적 자문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의정활동에 대한 법률 적 자문	-자치법규 제·개정, 관련 법규의 해석 등 자문 -의회관련 법률자문과 쟁송가건의 소송수행 등 -자문의뢰 후 7일 이내 답변서 제 출 의무	-의안의 법률적 자문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의정활동에 대한 법률 적 자문	-좌동	-좌동
위촉 정원 임기	-개업변호사 중 5인 이 내 -임기는 2년, 연임가능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변호사 -서울소재 대학 재직 법학교수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25명 이내	-10명 이내 -변호사로 보임함 -임기 2년, 재위촉 가능	-3인 임명 -변호사로 보임함 -임기 2년, 재위촉 가능	-15명 이내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 임직원, 변호 사, 입법·법률분야 전문가 -임기 2년, 재위촉 가능
자 문 과정	-사건실적부비치	-법제담당관과 사전협의와 요청	-사건실적부비치	-사건실적부비치	-입법정책담당관이 주관 -사건실적부비치
해 촉 사유	-직무수행 불성실	-품위손상, 불성실	-좌동	-좌동	-좌동
수 당 등	-월 20만원 -소정의 출석수당	-정액고문료 월 10만원 -법률자문료 1건당 30만원	-예산의 범위내 자문료 와 회의참석 수당 지급	-정액고문료 월15만원 -법률자문료 건당 10만원 -승소사례금 지급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규 정

4. 1. 광역의회별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현황-2					
광역자치단체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기도의회
목적 직무	-의안의 법률적 자문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의정활동에 대한 법률적 자문 -의장이 위임한 의정지원용 연구용역 수행	-자치법규 제·개정,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등 자문 -의장이 위임한 의정지원용 연구용역 수행	-의안의 법률적 자문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의정활동에 대한 법률적 자문	-입법고문은 입법사안, 입법정책, 의회 운영 등을 자문함 -고문변호사는 법령해석, 행정심판, 의장의 의뢰에 대해 자문함 -자문사항 상세히 규정	-좌동 -의장이 입법자문과 정책개발 용역 의뢰 가능
위촉 정원 임기	-개업변호사, 법학교수, 관련 분야 전문가 중 5인 이내 -임기는 2년, 연임가능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 임직원, 변호사, 입법·법률분야 전문가 5인 이내 -임기 2년, 재위촉 가능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 임직원, 변호사, 입법·법률분야 전문가 3인 -임기 2년, 재위촉 가능	-개업중인 변호사,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 10인 이내 임명 -임기 2년, 재위촉 가능	-변호사, 대학교수, 자치입법분야 전문가 20명 이내 위촉 -임기 2년, 1회에 한해 재위촉 가능
자문 절차	-자문기록부비치	-문서도 자문함이 원칙 -의정담당관이 주관 -자문기록부 비치	-정책입법담당관이 총괄 -사건실적부비치	-사건실적부비치	-입법정책담당관이 주관 -사건실적부비치
해촉 사유	-품위손상, 불성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수당 등	-월 10만원 이하 -자문 1건당 10만원	-정액고문료 월 25만원 -성과자문료는 월 5건 추가 시 1건당 5만원	-예산의 범위내 월20만원 이하 수당	-소정의 수당과 출석수당 지급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규정

4. 1. 광역의회별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현황-3					
광역자치단체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충청북도의의회	충청남도의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전라남도의의회
목적 직무	-의안의 법률적 자문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의정활동에 대한 법률적 자문	--입법고문은 입법사안, 입법정책, 의회 운영 등을 자문함 -고문변호사는 법령해석, 행정심판, 의장의 의뢰에 대해 자문 -자문사항 상세히 규정	-의안의 법률적 자문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의정활동에 대한 법률적 자문	-입법고문은 입법사안, 입법정책, 의회 운영 등을 자문함 -고문변호사는 법령해석, 행정심판, 의장의 의뢰에 대해 자문 -자문사항 상세히 규정	-좌동
위촉 정원 임기	-개업중인 변호사 중 2인 이내 -임기는 2년, 연임가능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 임직원, 변호사, 입법·법률분야 전문가 5인 이내 -임기 2년, 재위촉 가능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 임직원, 변호사, 입법·법률분야 전문가 10인 이내 -임기 2년, 재위촉 가능	-개업중인 변호사,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 지식과 경륜을 갖춘자 8인 이내 -임기 2년, 재위촉 가능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변호사, 법학 교수, 입법분야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5명 이내 위촉 -임기 1년, 재위촉 가능
자문 절차	-사건실적부비치	-문서, 전화 등으로 자문함 -자문사항은 부서장에게 보고함 -자문기록부 비치	-자문기록부 비치	-입법정책담당관이 주관 -자문실적부비치	-정책담당관이 주관 -자문실적부비치
해촉 사유	-실적부진, 불성실	-품위손상, 불성실	-좌동	-좌동	-좌동
수당 등	-수당지급, 회의참석수당	-수당지급	-고문수당과 회의수당	-고문료와 회의비 지급	-자문료 월20만원 이하 지급

	4. 1. 광역의회별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현황-4	
	광역자치단체 의회	
	경상남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목적 직무	-입법고문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자문,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석과 자문, 의장이 위임한 의정관련 연구영역 수행 -고문변호사는 법령사항 자문, 쟁송사건 소송수행 등	-입법고문은 입법사안, 입법정책, 의회 운영 등을 자문함 -고문변호사는 법령해석, 행정심판, 의장의 의뢰에 대해 자문함 -자문사항 상세히 규정
위촉 정원 임기	-입법고문은 법률학 교수나 전문가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변호사 -정원은 8인, 임기 2년, 재위촉 가능	-입법고문은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 행정학 교수, 입법관련 경력자, 지방 행정관련 전문연구기관과 학회 임직원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의장이 3명 이내에서 임명 -임기 2년, 재위촉 가능
자문 절차	-입법담당관이 총괄 -자문실적부비치	-자문기록부 비치
해촉 사유	-실적부진, 불성실	-품위손상, 불성실
수당 등	-성과자문료는 월 5건 추가시 1건당 5만원 -1건의 사안에 대해 3시간 이상 자문 시 10만원 -공로를 의장이 인정한 경우 10만원	-수당지급

(3)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비교결과

- 경상북도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는 변호사만을 위촉함. 나머지 의회에서는 다른 전문가들도 위촉 가능함
- 서울특별시의회는 자문의뢰 후 7일 이내 답변서 제출을 의무화 함.
- 광주광역시의회와 대전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는 의장이 위임한 의정지원용 연구용역을 고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충청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상남도의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음

2) 광역자치단체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1)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의의

○ 의회가 예산안 및 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표 IV-6> 광역자치단체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요약표

지역	조례	비고
①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②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③부산광역시의회	미제정	
④대구광역시의회	미제정	
⑤인천광역시의회	미제정	
⑥광주광역시의회	미제정	
⑦대전광역시의회	미제정	
⑧울산광역시의회	미제정	
⑨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제정	
⑩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⑪강원특별자치도의회	미제정	
⑫충청북도의회	미제정	
⑬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⑭전북특별자치도의회	미제정	
⑮전라남도의회	미제정	
⑯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⑰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제정	

(2) 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 비교표

4. 2. 광역의회별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현황-1		
	광역자치단체 의회	
	경상북도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목적과 기능	-경상북도의회가 예산안 및 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검토·심의에 필요한 사항 -경상북도과 경상북도교육청 주요 사업의 예산분석 사항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등의 소요비용 추계에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의 예·결산과 재정관련 의정활동과 예산정책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시와 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분석·평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재정관련 정책대안 제시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에 대한 연구·분석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과 임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 -의장은 지방재정, 예산과 결산, 지방세 관련 세무와 회계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촉함 -위원회의 구성이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임기는 2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 -부의장 추천 의원 각1명, 상임위원회 추천 의원 각1명, 교섭단체 대표 추천 의원 각 1명,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원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 -위원은 의회 의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 연임 가능 -재정분석담당관이 1인의 간사를 담당함
관리방식과 내용	-의회사무처의 소관부서장이 위원회의 간사업무를 함 -위원회의 토론과 개최·과제 연구 발표 및 정책분석·평가 연구에 쓰는 제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 -위원은 예산·결산 정책과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자문결과서로 답변해야 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함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소위원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출석,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조사 연구 등을 실시함
기타		

4. 2. 광역의회별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현황-2		
	광역자치단체 의회	
	경기도의회	충청남도의회
목적과 기능	-경기도의회의 예산 및 결산 등 심사의 효율적 지원 -의장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예산안의 검토·심의 사항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연구 사항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충청남도의회의 예산안·결산 심의 등 효율적 수행 지원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검토·심의 -도와 교육청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분석에 필요한 사항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 추계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과 임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1명씩 포함되도록 의장의 위촉하며 임기는 2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함 -1인의 간사를 두며 예산정책담당관이 담당함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 -충청남도 의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의장이 위촉함 - 위원회의 구성이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임기는 2년 -1인의 간사를 두며 의회사무처 담당관 소관임
관리방식과 내용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함 -소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장이 지명위원으로 구성함 -소위원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함	-일상적인 위원회 운영방식과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둠
기타	-위원장은 예산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음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함

4. 2. 광역의회별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현황-3	
	광역자치단체 의회
	경상남도의회
목적과 기능	-경상남도의회 의원의 예산안 및 결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검토·심의 -도와 교육청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분석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과 임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 -충청남도 의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함 -1인의 간사를 두며 사무처 예산분석업무 담당관이 됨
관리방식과 내용	-일상적인 위원회 운영방식과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둠 -의장은 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홍보컨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음
기타	

(3) 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비교결과

- 17개 광역의회 중 경상북도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충청남도의회, 그리고 경상남도의회에서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회는 ‘예산정책위원회’, 경상북도·경상남도·충청남도의회는 ‘예산정책자문위원회’로 운영됨
- 경북도의회는 비교적 최근에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제1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여 자문과 재정분석 지원을 받고 있음

3)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의의

- 의회의 조례입법과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의 지원을 통해
의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표 IV-7>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요약표

지역	조례	비고
①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②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③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④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⑤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⑥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⑦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⑧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⑨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⑩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⑪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⑫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⑬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⑭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정	
⑮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⑯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⑰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2)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교표

4. 3. 광역의회별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1	
	광역시자치단체 의회
	경상북도의회
목적과 기능	-경상북도의회 의원의 입법정책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함 -위원회 소속 의원연구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과 관리 -의원입법과 정책대안개발을 위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도민 입법청구에 관한 사항의 검토·자문
위원회 구성과 임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명 이내로 구성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한 의원 각 2명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3명 -각 연구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임기는 2년 이내
관리방식과 내용	-연구단체는 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 가능 -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 여부를 승인함. -연구단체는 매 연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연구활동계획을 제출하며, 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함
결과의 평가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이를 하나의 연구단체로 보고 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게 함 -입법정책담당관이 위원회 운영과 연구단체 관련 업무총괄
기타	-정책위원회와 의원의 연구단체 구성과 지원을 하나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4. 3. 광역의회별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1	
	광역자치단체 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목적과 기능	-의원 연구단체의 지원을 통해 역량제고와 입법활성화 도모 -연구단체란 조례입법과 정책개발 목적으로 등록된 단체
위원회 구성과 임기	연구단체의 구성: 10명~20명 이하의 서울특별시회의회의원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은 5명 초과금지 -각 의원은 3개 이내 단체에 가입가능, 1개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으로는 구성할 수 없음 -연구단체의 등록과 지원 등은 서울특별시 운영위원회 소관
관리방식과 내용	-연구활동 계획서를 1월 20일 또는 7월 20일까지 제출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5% 범위내 지원 -1개 연구단체에 600만원 이상 지원 불가 -의장은 위원회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 차등지급 가능
결과의 평가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시기에 따라 6월 30일 중간보고서, 12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기타	-존속기한: 연구단체 등록일부터 행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함

4. 3. 광역의회별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2		
	광역자치단체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목적과 기능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의원연구단체”란 의원이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한 단체를 말함 -“정책연구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용역을 말함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연구단체”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개념은 좌동 -”의원정책개발비“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
연구단체의 구성 관리방식과 내용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함 -의원연구단체대표는 다른 의원 연구단체대표를 겸임할 수 없으며, 연구단체에 3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음 -연구단체는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운영위원회가 심의함	-좌동
	-연구활동의 범위: 정책연구용역, 정책연구 개발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 등, 의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활동	-연구활동의 범위: 좌동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연간 500만원 이내 -정책연구용역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함
결과의 평가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함 -결과보고서를 의회자료실과 홈페이지에 공개	-연구단체는 정책용역 결과보고서를 위방 및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회홈페이지에 공개함
기타		-위원회에 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어 ‘정책연구용역’을 관리

4. 3. 광역의회별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3		
	광역자치단체 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목적과 기능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정책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	-의정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연구단체의 구성 관리방식과 내용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연구단체마다 대표자를 둠 -각 의원은 3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음 -연구단체는 9명 이내로 구성된 '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를 두어 등록과 운영 등을 심사함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 1인 의장이 추천한 전문가 1인, 민간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함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 -1개 연구단체에 500만원 이하로 지원함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의원은 3개 이내 단체에 가입가능 -연구활동범위는 정책연구용역 세미나,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 등을 말함 -의장은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경비를 지원하며,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지원 가능
결과의 평가	연구단체는 매 연도 11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연구활동비내역과 함께 의장에게 제출함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경비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함
기타	의원연구단체가 원하는 경우 연구활동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음	-운영위원회가 심의함

4. 3. 광역의회별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4		
	광역자치단체 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목적과 기능	-대전광역시의회위원의 입법활동과 정책재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함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정책개발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모색함
연구단체의 구성 관리방식과 내용	-연구회는 의원 4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함. -연구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음 -연구위원회의 등록과 관리는 운영위원회가 수행함 -다만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함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함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1명을 두며, 입법정책담당관이 담당	-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간사를 두고, 각 의원은 3개 이내 단체에 가입 가능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다른 연구단의 대표 겸임 불가 -연구활동범위는 정책연구용역 세미나,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 등을 말함 -의장은 1개의 의원연구단체에 연간 450만원 이하로 지원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증액 가능
결과의 평가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경비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함	-회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며, 활동 종료 후 결과를 30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함
기타	상이한 상임위원회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강조함	-의원연구단체 존속기한은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함

4. 3. 광역의회별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5		
	광역자치단체 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기도의회
목적과 기능	-이 규칙은 의원의 연구모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경기도의회의 연구용역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함
연구 단체의 구성 관리 방식과 내용	-연구모임은 의회 의원 3명 이상과 교수, 전문가 등을 포함한 회원으로 구성함 -연구모임의 운영과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심의위원회’를 둠 -이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함 -연구모임 활동기간은 등록서를 통지한 날로부터 해당 연도 11월 30일 까지로 함 -연구활동 지원 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함 -의장은 연구모임의 연구용역을 위해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연구단체란 연구·개발을 위해 등록한 단체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구성한 단체까지 포함함 -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간사를 두고, 각 의원은 3개 이내 단체에 가입 가능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 겸임 불가 -하나의 연구단체에 같은 상임위원은 7명까지 가입 가능 -연구단체는 1개 교섭단체 소속만으로는 구성할 수 없음 -의장은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함 -운영위원회 소속의원 4명,외부전문가 5명, 시민단체 전문가 2명 등 12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 가능함 -입법정책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임
결과의 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한 경우 12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함.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함	-회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며, 활동 종료 후 결과를 30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함
기타	-연구모임을 의원 이외의 외부인사도 참여함 -운영위원회가 연구모임 심의위원회가 됨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추진 과제의 사전검토 가능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의원의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일까지

4. 3. 광역의회별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6		
	광역자치단체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충청북도의의회
목적과 기능	-의원연구회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연구단체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연구단체의 구성 관리방식과 내용	-연구활동비는 정책연구용역비와 세미나·토론회·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경비를 말함 -연구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연구회는 3개까지 가입할 수 있음. -연구회 활동 기간은 임기내 전·후반기 각 2년으로 하며, 기존 연구회는 재등록 할 수 있음 -의장은 연구회 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심의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함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3명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함	-연구활동이란 연구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말함 -연구단체는 5명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원 1명이 가입 가능한 연구단체의 수는 2개 이하로 함 -의회운영위원회가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운영함 -의장은 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총북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30일 이내로 연구활동 결과보서서를 제출해야 함
결과의 평가	-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기술하는 것으로 같음하고 있음	-연구용역 종료 30일 이내로 성과물(책자, 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기타		-의회 운영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됨

4. 3. 광역의회별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7		
	광역자치단체 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목적과 기능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함	-의회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
연구단체의 구성 관리방식과 내용	-연구모임이란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업무의 관련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의회에 등록된 모임 -연구모임은 의원 2명 이상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함 -대학교수등 전문가, 충남도지사가 설립하여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임직원과 관련 분야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함 -연구모임의 명칭은 연구모임 앞에 연구분야 또는 과제명을 붙여 사용하며, 주제는 대표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범위에서 선정함 -연구모임 등록과 연구활동 관리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가 대행하며, 입법정책담당관이 지원함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위원과 연구책임의원 각 1명을 둔다. 의원 1인은 3개 단체에만 가입 -연구단체운영심의위원회를 8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의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 1인,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사무처장 등 8인으로 구성함 -의장은 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전북연구원 등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용역추진이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결과의 평가	-의장은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충청남도의회 누리집에 공개해야 함	-연구단체는 매년 12월 30일까지 당해 연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함 -연구영역은 종료 후 30일 이내로 성과물(책자, 파일)을 제출함
기타	-의원 이외의 외부인사까지 포함하여 연구모임을 구성함 -연구모임 명칭규정과 주제 선정의 제한	-의회 운영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됨 -연구용역 전문기관 사전 검토

4. 3. 광역의회별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8		
	광역자치단체 의회	
	전라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목적과 기능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및 위원회 등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연구단체를 통해 연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연구단체의 구성 관리방식과 내용	-연구단체에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교섭단체 등이 포함되며, 의원 연구단체는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의원은 2개 이내의 단체에 가입할 수 있음. -의원 연구단체 활동비를 계획과 결과를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단체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함 -1개 연구단체에는 같은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제외) 소속 의원이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 용역을 관리함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함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함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가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조사, 연구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함 -연구단체는 7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의원으로 구성해야 함. 각 의원은 연구단체 가입을 2개까지만 할 수 있음. -연구단체 관련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 함 -의장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을 위해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사 전에 외부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음
결과의 평가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품을 전라남도의회 누리집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함	-연구단체는 해마다 7월 31일까지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12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함
기타		

4. 3. 광역의회별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9	
	광역자치단체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목적과 기능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지원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입법활동을 활성화함
연구단체의 구성 관리방식과 내용	-“의원연구단체”란 자치법규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도의회 의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도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함 -도의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소관전문위원실을 상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특정 전문위원실이 3개 이상의 연구단체를 담당할 경우 등록을 거부하거나 연구주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단체 등록취소, 2,000만원 초과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우수 연구단체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함.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된 의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위원회의 간사는 1명을 두며, 의원연구단체 총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담당함 -2,000만원을 초과하는 정책개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별도의 용역심의 요청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
결과의 평가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함
기타	-연구용역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위원실이 3개 이상의 연구단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함

(3)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교결과

- 연구단체의 구성에 있어서는 경상북도의회는 필요할 경우 외부인사 1인을 의원 연구단체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동 조례 13조 3항). 다른 광역의회는 의원연구단체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의원 3인 이상에 외부인사를 포함시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충청남도의회는 의원 2인 이상에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의회, 충청북도의회, 그리고 경상남도의회는 용역을 심의하기 전에 타당성과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외부의 산하 전문기관에 심의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

4) 광역자치단체의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1) 의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의의

○ 정책연구 용역의 타당성, 효율성, 투명성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표 III-8> 광역자치단체의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요약표

지역	조례	비고
①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②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③부산광역시의회	미제정	
④대구광역시의회	미제정	
⑤인천광역시의회	미제정	
⑥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정책연구용역 업무관리 규정	
⑦대전광역시의회	미제정	
⑧울산광역시의회	미제정	
⑨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제정	
⑩경기도의회	미제정	
⑪강원특별자치도의회	미제정	
⑫충청북도의회	미제정	
⑬충청남도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⑭전북특별자치도의회	미제정	
⑮전라남도의회	미제정	
⑯경상남도의회	미제정	
⑰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제정	

(2) 의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비교표

4. 4. 광역의회별 정책연구 용역관리에 관한 조례 현황-1		
	광역자치단체 의회	
	경상북도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목 적 개념	-정책연구 용역의 타당성, 효율성, 투명성 확보 -‘정책연구용역’은 조사·연구를 위해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방식의 연구	-의회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의 지원을 위한 활동임 -“입법정책 연구용역이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연구용역임
계 획 위 위 원 회 구 성	-주관부서와 용역업무 총괄부서(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 -본예산 편성전 총괄부서의 심의를 거침 -13명 이내의 위원구성, 위촉직 위원 과반수 이상 임명.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 이 10분의 7이 초과하지 않게 구성.	-시의회 의장의 역할을 강조함 -의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함 -용역의 공모와 관리는 법제담당관과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함
관 리 방 식	-정책용역실명제 -공개경쟁입찰 원칙 -결과의 공개: 종료 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경상북도 누리집에 공개	-용역종료 후 과제별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담당관은 “정책위원회” 위원장에게 활용결과 보고서를 제출함
결 과 평 가	-과제담당관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용역 완료보고회 개최	-용역결과물과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함
결 과 활 용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에 반영	-평가와 활용 등 사항은 의장이 정함

4. 4. 광역의회별 정책연구 용역관리에 관한 조례 현황-2		
	광역자치단체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충청남도의회
목적 개념	-용역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정책연구용역’은 위원회 소관분야의 용역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을 말함	-충청남도의회가 시행하는 의원정책개발용역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계획 위원회 구성	-의장은 “의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9명 이내로 구성함 -입법조사담당관이 당연직 위원이 됨 -심의위원 임기는 2년, 재위촉 가능 -용역을 추진하는 위원회는 매년 2월말까지 용역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총괄부서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을 말함 -의장은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말까지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세움
관리방식	-구체적 관리방식을 기재하지 않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선정심의회는 정책위원회에서 함 -과제가 선정되면 총괄부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계약담당부서에 요청해야 함
결과평가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기술함	-과제제안 연구모임 대표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을 주관함 -도의회 의장이 용역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을 평가함
결과활용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기술함	-완료된 과제는 결과보고서와 평가결과를 의원 홈페이지에 공개함

(3) 의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비교결과

- 경상북도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그리고 충청남도의회에서만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있음
- 그 이외의 광역도의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또는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등에 하나의 조문으로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5) 광역자치단체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1)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의의

- 의원의 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하고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며,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표 IV-9> 광역자치단체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요약표

지역	조례	비고
①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②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③부산광역시의회	미제정	
④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⑤인천광역시의회	미제정	
⑥광주광역시의회	미제정	
⑦대전광역시의회	미제정	
⑧울산광역시의회	미제정	
⑨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제정	
⑩경기도의회	미제정	
⑪강원특별자치도의회	미제정	
⑫충청북도의회	미제정	
⑬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⑭전북특별자치도의회	미제정	
⑮전라남도의회	미제정	
⑯경상남도의회	미제정	
⑰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제정	

(2)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조례 비교표

4. 5. 광역의회별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현황-1	
	광역자치단체 의회
	경상북도의회
목적과 기능	-경상북도의회 의원의 입법정책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함 -의원입법과 정책대안개발을 위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위원회 소속 의원연구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과 관리 -도민 입법청구에 관한 사항의 검토·자문
위원회 구성과 임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명 이내로 구성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3명 -임기는 2년 이내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한 의원 각 2명 -각 연구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관리방식과 내용	-연구단체는 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 가능 -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 여부를 승인함. -연구단체는 매 연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연구활동계획을 제출하며, 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함
결과의 평가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이를 하나의 연구단체로 보고 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게 함 -입법정책담당관이 위원회 운영과 연구단체 관련 업무총괄
기타	-정책위원회와 의원의 연구단체 구성과 지원을 하나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4. 5. 광역의회별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현황-2		
	광역자치단체 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목적과 기능	-의정활동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업무의 지원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정책연구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및 자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평가
위원회 구성과 임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법제담당관이 1인의 간사를 담당함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1명, 의원 또는 각계 전문가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임명함 -위원의 임기는 1년, 연임 가능
관리방식과 내용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함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함 -소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사전검토·조정,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을 제시함	
결과의 평가	-사무처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활동지원 부서를 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조사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기타	-	

4. 5. 광역의회별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현황-3	
	광역자치단체 의회
	대구광역시의회
목적과 개념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함 -의원의 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의원 연구단체나 대구광역시의회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련사항의 관리
위원회 구성과 임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 -의장 추천의원 1명,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1명,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그 밖에 의원 또는 각계 전문가 -위원은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임명함 -심의위원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
관리방식과 내용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함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함 -소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사전검토·조정,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의 개최 여부를 결정함
결과의 평가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료제출과 의견 청취를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기타	

4. 5. 광역의회별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현황-4	
	광역자치단체 의회
	충청남도의회
목적과 개념	-충청남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연구 업무를 심사·수행하기 위해 설치함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및 자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과제의 심의·선정 및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활용관리
위원회 구성과 임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 -의장 추천의원 1명,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1명, 의원 또는 각계 전문가,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위원은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며 입법정책담당관이 1인의 간사를 담당함 -위원의 임기는 전반기, 후반기로 구분하여 수행함
관리방식과 내용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함 -소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사전검토·조정,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의 개최 여부를 결정함
결과의 평가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료제출과 의견 청취를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기타	

(3) 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비교결과

- 각 광역의회는 기본적으로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에 필요한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정책용역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정한 광역의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거나 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 따라서 정책위원회의 역할에 약간의 차이를 나타냄
- 17개 광역의회 중 경상북도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그리고 충청남도의회는 정책연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함.

6)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1)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의의

- 현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의정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의미가 있음
- 특히 각계의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인사 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의의를 가짐

<표 IV-10>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요약표

지역	조례	비고
①경상북도의회	미제정	
②서울특별시의회	미제정	
③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④대구광역시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	

⑤인천광역시의회	미제정	
⑥광주광역시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	
⑦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⑧울산광역시의회	미제정	
⑨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제정	
⑩경기도의회	미제정	
⑪강원특별자치도의회	미제정	
⑫충청북도의회	미제정	
⑬충청남도의회	미제정	
⑭전북특별자치도의회	미제정	
⑮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⑯경상남도의회	미제정	
⑰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2)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비교표

4. 6. 광역의회별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현황-1				
	광역자치단체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목적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기능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와 자료수집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의회의 의제개발과 정책대안 수립을 위한 자문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구성	-50명 이내로 구성		-30명 이내	-30명 이내
임기	-2년, 연임 가능	-2년	-2년	-2년, 1회 연임 가능
위촉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가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분야별 전문가:관련 교수, 정책 분석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지닌 전문가 2. 기타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와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한 전문가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정책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가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으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자문위원회를 ‘정책네트워크’라고 표현함	

4. 6. 광역의회별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현황-2			
	광역자치단체 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목적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기능	-쟁점안건·행정사무감사 등에 관한 기술적·학술적 자문 -도민 관심도가 높은 현장방문에 동행하여 현장 중심의 전문가적 자문 -상임위 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의정발전방안 제시 -그 밖에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참여 등을 통한 자문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대안 개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주요 쟁점안건 등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 -자치입법, 정책,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의정발전방안 제시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의정활동과 자치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30명 이내	-35명 이내, 특정성별10분의 6 한도유지	-50명 내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
임기	-2년	-2년	-2년, 1회 연임
위촉	-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가 -전직 공무원으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가 -4급 상당 이상의 전직 공무원으로서 소관사항에 식견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지역주민을 대변할 덕망 있고 신뢰성 있는 지역 인사 -5급 상당 이상 전직공무원, 교수,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타			

(3) 광역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비교결과

- 의정자문위원회는 7개 광역의회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연구조사와 자료수집, 의회 지정 연구과제의 연구, 의회의 의제개발과 정책대안 수립을 위한 자문,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와 같은 것으로 모두 대동 소이함
- 위촉대상 위원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나타나고 있음. 주로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의 전문가나 의정에 전문적 식견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광주광역시의회는 이에 더하여 시민단체 추천인사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덕망있는 지역인사와 전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5. 지방의회 활동의 자율성

1)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법평가 조례

(1)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의의

- 입법에 대한 사전·사후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입법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례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의미가 있음

<표 IV-11> 광역자치단체조례 입법평가 조례 요약표

지역	조례	비고
①경상북도	미제정	
②서울특별시	미제정	
③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교육청 입법평가 제정
④대구광역시	미제정	
⑤인천광역시	미제정	교육청 입법평가 제정
⑥광주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⑦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교육청 입법평가 제정
⑧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⑨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의회 조례로 제정
⑩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⑪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⑫충청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⑬충청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⑭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⑮전라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교육청 입법평가 제정
⑯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⑰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2)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법평가 조례 비교표

5. 1.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입법평가 조례 현황-1			
광역자치단체 의회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목 적 개념	-조례의 실효성 확보 -자치법규의 실효성·적합성 등을 사전·사후에 입법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		-조례의 실효성 확보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는 것
분 석 주체	- 도의회		- 도의회
시기 적 용 범위	-사전 입법영향분석: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제정 또는 전부개정하는 조례를 대상 -사후 입법영향분석: 도 의회 입법정책위원회가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와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4년마다 매년 12월 중에 시행		-사후 평가: 도 의회 입법평가위원회가 2년마다 실시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
제외 사항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		-좌동
평 가 항목	사전평가 -입법의 필요성 -적법성 / 중복성 -비용 / 의견수렴	사후평가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 -공평성 -지원의 적정성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결 과 활용	-위원회는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가 충실히 반영된 경우, 이를 모범 조례로 선정할 수 있음.		

5. 1.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입법평가 조례 현황-2			
	광역자치단체 의회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목적 개념	도 및 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 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	-좌동	-좌동
분석 주체	-단체장	-도의회	-단체장
시기 적용 범위	-사후 평가: 도 의회 입법평가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실시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 난 조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	-좌동
제외 사항	입법평가 대상 조례 중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 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좌동	-좌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 예에 관한 조례
평가 항목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좌동	좌동
결과 활용			

5. 1.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입법평가 조례 현황-3			
	광역자치단체 의회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목 적 개 념	도 및 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	-좌동	-좌동
분 석 주 체	-단체장	-단체장	-도의회
시기 적 용 범 위	-사후 평가: 도 의회 입법평가위원회가 4년마다 실시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	-2년 마다 실시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
제 외 사 항	-좌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좌동	-좌동
평 가 항 목	-좌동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 -입법내용의 유효성 및 효율성 -입법내용의 공평성 -주민의견 수용성 -지원·위탁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별표로 정함 -별표의 입법평가 분석지표를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결 과 활 용	상임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소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 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		

5. 1.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입법평가 조례 현황-4			
	광역자치단체 의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목적 개념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을 분석함으로 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	입법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지를 분석·평가
분석 주체	-단체장	-시의회	-시의회
시기 적용 범위	-사후 평가: 3년마다 실시	-시행 후 2년 경과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한지 4년이 지난 조례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 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
제외 사항	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 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및 기관설치·조직 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 의 조례	-좌동
평가 항목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별표로 정함 -별표의 입법평가 분석지표를 변경할 경 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결과 활용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 영하도록 노력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

5. 1.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입법평가 조례 현황-5		
	광역자치단체 의회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목적·개념		시행효과와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
분석주체	-단체장	-단체장
시기 적용범위	-사후 평가: 3년마다 실시	입법평가는 3년 마다
제외 사항	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1. 기구정원·기관설치·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4.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례
평가항목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결과활용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

(3)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법평가 조례 비교결과

- 본 과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13개 자치단체에서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 중 의회가 분석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6개(세종특별자치시는 의회조례로 제정)
- 단체장이 분석주체가 되는 경우 7개임
-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는 2013년 광주광역시에서 제정·시행한 이후 많은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그 중 경기도의회는 조례의 제정 전과 후 모두에 대한 분석·평가를 시행하는 등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음
- 교육청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곳은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의 네 군데가 있었음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은 시장이 주체가 되어 사후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경기도는 사전적 평가도 하고 있음

2) 광역자치단체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

(1) 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

- 의회가 주권자인 주민의 민원·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펼치는 현장의정 활동을 지원하여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표 IV-12> 광역자치단체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 요약표

지역	조례	비고
①경상북도의회	미제정	
②서울특별시의회	미제정	
③부산광역시의회	미제정	
④대구광역시의회	미제정	
⑤인천광역시의회	미제정	
⑥광주광역시의회	미제정	
⑦대전광역시의회	미제정	
⑧울산광역시의회	미제정	
⑨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 12. 22
⑩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 5
⑪강원특별자치도의회	미제정	
⑫충청북도의회	미제정	
⑬충청남도의회	미제정	
⑭전북특별자치도의회	미제정	
⑮전라남도의회	미제정	
⑯경상남도의회	미제정	
⑰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제정	

(2) 광역자치단체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 비교표

5. 2. 광역자치단체별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 현황-1	
	광역자치단체 의회
	경기도
목 적 개념	-현장의정활동운영을 체계화하고 지원의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현장 의정활동”이라함은 의회에서 회기 또는 비회기 중 도민의 민원·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펼치는 의정 활동
계획 수립	-의장은 의회 교섭단체대표, 의회운영위원장, 상임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의회 현장의정활동운영의 기본방향을 강구함. -의회사무처장은 1월중 연간 현장의정활동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현장의정활동운영계획을 의원에게 홍보하며, 솔선 참여를 권장함
적 용 범위	-의회(도의회 의장, 교섭단체,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현장확인, 시설견학, 간담회, 연찬회 등 현장참여활동 -의회(도의회 의장, 교섭단체,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위문, 불우이웃 돕기, 일손돕기, 재해복구 등 자원봉사활동 -기타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활동
지 원 사항	의회사무처는 의회현장 의정활동에 필요한 수요조사와 자료의 유지관리, 참여의원의 안전대책, 언론홍보, 현장 활동수행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함 의회사무처장은 연간 현장의정활동운영 결과를 작성하여 연도 말에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기타	

5. 2. 광역자치단체별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 현황-2	
	광역자치단체 의회
	세종특별자치시
목 적 개념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현장의정활동의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의정활동의 운영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현장의정활동”은 세종특별자치시의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사업장 및 민원·생활 현장, 다른 시·도의 모범사례 등을 직접 찾아가서 펼치는 의정 활동
계획 수립	-의장은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현장의정활동 운영의 기본방향을 정함 ② 의회 사무처장은 연간 현장의정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적 용 범위	-의회(의장,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포함함)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현장확인, 시설견학, 간담회, 연찬회 등 현장참여활동 -의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위문, 불우이웃 돕기, 일손돕기, 재해복구 등 자원봉사활동 -그 밖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활동
지원 사항	-사무처장은 현장의정활동에 필요한 수요조사와 자료의 유지관리, 참여 의원의 안전대책, 언론홍보, 현장활동수행 등의 행정적 지원하여야 함 -이외에도 불우이웃 돕기, 일손돕기, 재해복구 등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이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기타	

(3) 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 비교결과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경우 현장의정활동을 정의하는 데에서 다른 시·도의 모범사례를 직접 찾아가서 펼치는 의정활동이라고 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또한 현장의정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둠
- 경기도의회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모두 성과가 우수한 의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여 장려하고 있음

3) 광역자치단체의회 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 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의의

- 의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운영제도 개선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표 IV-13> 광역자치단체의회 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요약표

지역	조례	비고
①경상북도의회	미제정	
②서울특별시의회	미제정	
③부산광역시의회	미제정	
④대구광역시의회	미제정	
⑤인천광역시의회	미제정	
⑥광주광역시의회	미제정	
⑦대전광역시의회	미제정	
⑧울산광역시의회	미제정	
⑨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제정	
⑩경기도의회	미제정	
⑪강원특별자치도의회	미제정	
⑫충청북도의회	미제정	
⑬충청남도의회	미제정	
⑭전북특별자치도의회	미제정	
⑮전라남도의회	미제정	
⑯경상남도의회	미제정	
⑰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광역자치단체의회 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비교표

5. 3. 광역자치단체별 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현황-1	
	광역자치단체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목 적 개 념	-의원의 의회운영 제도개선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설 치	-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를 두어 의회운영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수립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
기 능	-의정현안에 대한 도의회 의장의 자문에 대한 회신 -의회운영위원장이 요구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자치분권 차원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혁신을 위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이 의회운영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 무 위 원 회	-위원장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도의회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실무위원회는 아래의 기능을 수행함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자료수집·분석·조사·연구 ·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과제의 이행 방안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기 타	

(3) 의회 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비교결과

- 2022년 1월 13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등에서 비롯된 광역의회의 의정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의회의 운영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은 당위임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4)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1)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의 의의

- 강령(code)”은 “특정한 조직이나 전문가 집단(예를 들어서 의사,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등)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스러운 가치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이러한 집단들의 열망이나 혹은 행동방향에 대한 안내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음. . 윤리강령(code of ethics) : 조직의 내부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은 윤리지침을 말함(부패방지위원회, 2003)

「지방자치법」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표 IV-14>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요약표

지역	조례	비고
①경상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②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③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④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⑤인천광역시의회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⑥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⑦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⑧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⑨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⑩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⑪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⑫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⑬충청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⑭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⑮전라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⑯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⑰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2)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비교표

5. 4. 광역의회별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현황-1					
	광역자치단체 의회				
	경상북도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기본구성 내용	제1조 목적 제2조 윤리강령 제3조 윤리실천규범 제4조 윤리심사 제5조 겸직신고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7조 수의계약체결 재산사항 신고 제8조 겸직금지 제9조 징계 -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2조 윤리강령의 준수 제3조 품위유지 제4조 청렴의무 제5조 직권남용금지 제6조 직무 또는 직위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제7조 공직기밀의 누설금지 제8조 사례금 수수금지	제9조 회피의무 제10조 재산신고 제10조의2 겸직신고 제11조 허례허식 금지 제12조 국외활동 보고 제13조 회의출석의무 제14조 윤리심사와 절차 -14개 조문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는 좌동 제11조 기부행위의 금지 제12조 국외활동 보고 제13조 회의출석의무 제14조 겸직신고 제15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16조 징계 등 -1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2조 윤리강령 제3조 윤리실천규범 제4조 윤리심사 제5조 겸직신고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7조 관리인 등 겸직금지 제8조 회의출석 -8개 조문
기타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46조를 제38조 규정이라 함	-회의출석의무: 의회 출석일수를 공개하고, 그 공개 범위 및 방식 등은 의장이 정함		-회의출석의무를 명시함	-기본구성은 좌동 -허례허식 금지, 국회활동보고, 회의출석의무 등을 따로 조문을 구성하여 제시함 -14개 조문

5. 4. 광역의회별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현황-2					
	광역자치단체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기본구성 내용	제1조 목적 제2조 윤리강령 제3조 윤리실천규범 제4조 윤리심사 등 제5조 겸직신고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6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제2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5조 윤리강령 제6조 윤리실천규범 제7조 겸직신고 제7조의2 출자·출연기관 등 겸직 금지	제7조의 3 계약체결 제한 등 제7조의4 겸직 등에 관한 징계 제8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9조 공직기밀의 누설금지 제10조 회의출석 제11조 윤리심사 등 제24조 선서 제25조 청가 및 결석 제26조 사직 제6장 위원회 관리 제321조 특별위원회	제1조 목적 제2조 윤리강령 제3조 윤리실천규범 제4조 윤리심사 등 제5조 겸직신고 제5조의2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제출 제5조의3 징계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등 제2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4조 윤리강령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6조 윤리심사 등 제7조 겸직신고 제7조의3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3장 행동강령
기타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5. 4. 광역의회별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현황-3					
	광역자치단체 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본구성 내용	제1조 목적 제2조 윤리강령 제3조 윤리실천규범 제4조 윤리특별위원회 제5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6조 겸직신고 등 제7조 경직 등 금지 제8조 징계 등 제9조 영리행위의 제한 -9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3조 윤리강령 제4조 윤리강령의 준수 제3장 윤리실천규범 제5조 공익우선 제6조 청렴과 품위유지 제7조 투명성의 확보 제8조 직권남용의 금지 제9조 제척과 회피	제10조 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와 거래제한 제11조 기밀누설 금지 제12조 사례금의 수수금지 제13조 겸직금지 제13조의2 겸직신고 제13조의3 영리행위의 제한 제14조 재산의 등록과 신고 제15조 병역사항의 신고와 공개 제16조 기부행위의 금지 등 제17조 국외활동 제18조 회의출석 제19조 징계	제1조 목적 제2조 윤리강령 제3조 품위유지 제4조 청렴이무 제5조 직권남용금지 제6조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제7조 기밀수설금지 제8조 사례금 수수금지 제9조 겸직금지 제10조 회피의무 제11조 재산신고	제12조 기부행위금지 제13조 회의출석 제14조 윤리심사 제15조 겸직신고 제16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17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18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19조 징계
기타	-			-	

5. 4. 광역의회별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현황-4				
	광역자치단체 의회			
	충청북도의의회	충청남도의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기본구성 내용	제1조 목적 제2조 윤리강령 제3조 윤리실천규범 제4조 윤리심사 제5조 검직신고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2조 윤리강령 제3조 윤리실천규범 제4조 윤리심사 등 제5조 검직신고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등 제2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4조 윤리강령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6조 윤리심사 등	제7조 검직신고 제7조의2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 제7조의 3 관리인 등 검직 금지 제7조의 4 징계 등 제8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3장 행동강령 제1절 공정한 직무수행
기타	-제3조 윤리실천규범에서 기밀누설, 국외활동보고, 회의출석 등을 규정함	-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의원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5. 4. 광역의회별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현황-5					
	광역자치단체 의회				
	전라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본구성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윤리강령 제3조 윤리강령 제4조 윤리강령의 준수 제3장 윤리실천규범 제5조 공익우선 제6조 청렴과 품위유지 제7조 직권남용의 금지 제8조 사례금의 수수금지 제9조 제척과 회피	제10조 재산의 등록과 신고 제11조 국외활동 제12조 회의출석 제13조 윤리심사 등 제4장 의원 겸직 등 제한 제14조 겸직신고 제15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16조 자료 제출 등 제17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18조 징계	제1조 목적 제2조 윤리강령 제3조 윤리실천규범 제4조 윤리심사 등 제5조 겸직신고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제출 제8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9조 징계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윤리강령의 준수 제4조 제5조 공익우선 제6조 청렴 및 품위유지 제7조 투명성 확보 제8조 직권남용의 금지 제9조 제척 및 회피 제10조 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및 거래제한	제10조2 소속 상임위원회 등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제11조 기밀누설금지 제12조 사례금 등의 수수금지 제13조 겸직신고 제14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15조 국외활동 제16조 회의출석 제17조 윤리심사
기타	-제3조 윤리실천규범에서 기밀누설, 국외활동보고, 회의출석 등을 규정함		-	-	

(3)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비교결과

- 17개 광역의회는 모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그 중 울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는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하나의 조례에 담고 있음.

6. 비교분석의 종합

1) 자치법규체계: 기본 조례

○ 현재까지 제정된 광역시·도의회 기본 조례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형

- 서울특별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그리고,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여기에 속함
 -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국회법」과 같이 지방의회 내부규율의 기본법 형태를 갖추춤
 - 「지방자치법」 내용을 중복적으로 확인하고 재차 다른 조례와 규칙에 위임하는 형식 구비
 - 「지방자치법」 위임이 없이 제정된 조례를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다른 조례에 위임(예를 들어, 「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회의규칙」)
 -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기본 조례에서 규정(예: 위원회 규정)
 - 지방의회 위상 표명 조항
- ① 단체장 출석요구, 시정질문, 서면질의
 - ② 단체장 등의 의회 발언에 대한 의장의 동의권
 - ③ 의회예산 편성에 대한 단체장의 존중의무 규정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형

- 경기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라남도의회가 여기에 속함

- 지방의회의 지방자치구현에 대한 의지 표명
- 도민의 권리가 무엇인지 밝힘으로써 이에 대한 지방의회의 책임도 명확히 함
-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선언적 의미와 상징성 표명 수준

2) 지방의회 사무조직 관련

(1) 의회사무처 설치조례와 광역의회별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각 광역의회에서는 여건에 따라 특정한 업무의 담당관과 전문위원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함
- 대구광역시 의회, 서울특별시 의회, 경기도 의회는 사무처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정책지원 인력 관련 조례 및 규칙

- 17개 광역자치단체 의회 중 정책지원관에 관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한 곳은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 2곳임
-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 배속할 경우 전문위원이나 기존의 지원 전문인력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시도의회에서 시행하는 근무유형은 입법담당관실 근무형, 전문위원실 근무형, 병행근무형의 3가지임
 -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을 입법담당관실(「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지침」)로 하고 있음
- 각 광역의회에서는 여건에 따라 특정한 업무의 담당관과 전문위원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함
 - 정책지원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음(안성수·정세영, 2021)

- 전문인력의 채용과 보직경로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며, 정책지원관의 전공분야, 재직기간, 임용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됨

3) 의회 공무원 인사관련

(1) 의회공무원 인사규칙

- 대부분의 광역시·도 의회에서 대동소이한 인사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 방안이 다각도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전문적인 의회직렬의 신설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적지 않지만(박순종·박기관, 2022;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 2021), 소수의 소속 공무원 정수에서 능력발전이나 승진의 폭이 좁고, 전보될 수 있는 기관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유연한 제도의 시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에 의하면 ‘제4장 보직관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의회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인사교류에 있어서도 17개 광역자치단체 의회 중 7개 의회만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게 구성되어 있음
- 대구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는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하나의 조문으로 인사교류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음
 - 광역시·도의회, 광역시·도, 시군구, 시군구의회 모두를 규정: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 광역도의회, 시·군, 시·군의회 소속으로 한정: 경상북도
- 광역시의회, 집행기관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 대전광역시
- 광역도의회, 시·군의회만 규정: 경상남도

4) 정책역량 지원 관련

(1)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고문 위촉의 대상 범위는 서울특별시와 대다수의 경우를 보면 변호사, 서울 소재 대학 법학교수, 입법·법률 분야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로 되어 있음
- 그러나 경상북도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는 변호사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 경상북도의회는 1999년 조례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음
- 서울특별시의회는 자문 의뢰 후 7일 이내 답변서 제출을 의무화 하여 시간적 효율성을 기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의회와 대전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는 의장이 위임한 의정지원용 연구용역을 고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충청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상남도의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음

(2) 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경기도의회가 비교적 일찍 2015년 제정하였으나, 경상남도가 2018년, 서울시의회가 2019년, 충청남도가 2019년, 경상북도가 2022년 제정하는 등 최근 보급되는 추세임

- 예산정책자문위원회가 아닌 예산정책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회 중에서 서울시의회는 의원이 아닌 예산·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반면, 경기도의회에서는 도의원 중에서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음
-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속 위원 1명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종합적인 논의가 될 수 있게 한 점은 경북도의회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3)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안전부의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2023년 11월)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조례에 활용 근거를 마련한다면, 민간 전문가 등 외부인도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원으로 참가하여 자문·전문지식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예산(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 지급도 가능하며, 다만 의원 연구단체 구성원인 외부인이 직접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는 없음(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타 의원 연구단체 포함)”
- 이러한 자율성의 범위 안에서 각 광역의회는 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경상북도 의회는 의원이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다른 광역의회에서는 2-3개의 연구단체에 소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의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그리고 충청남도의회에서만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있음
- 그 이외의 광역도의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또는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등에 하나의 조문으

로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은 불가능(행정안전부의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하게 되어있음. 이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의회의 견제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판단됨

(5) 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경상북도의회는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조례에 규정함
- 경상북도의회는 정책용역에 대한 계획과 관리 그리고 평가를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의회는 생산된 정책용역의 결과물을 평가하는 역할을 함. 대구광역시의회의 정책위원회 조례에서는 의원 연구단체나 시의회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련사항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충청남도 의회에서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과제의 심의·선정 및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활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6)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연구조사와 자료수집, 의회 지정 연구과제의 연구, 의회의 의제개발과 정책대안 수립을 위한 자문,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와 같은 것으로 거의 대동 소이함
- 광주광역시의회는 특이하게도 의정자문위원회를 정책네트워크라고 칭함. 따라서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
 - 광주광역시의회가 이러한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은 소통채널이면서 창의적인 정책개발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의회의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
 - 광주광역시의회는 5개 분과(의회운영분과, 행정자치분과, 환경복지분과, 산업건

설분과, 교육문화분과)에서 의원, 학자, 시민단체의 정책네트워크 위원들이 주요 정책제안, 조례제정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음(『빅데이터뉴스』, 2019. 10. 23.)

5) 지방의회의 자율성

(1)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법평가 조례

-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입법평가의 주체를 단체장으로 하고 있으나,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의회를 분석 주체로 하고 있음
- 모두 조례의 사후적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입법평가위원회 또는 입법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평가하고 있음. 다만,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회를 통해 사전적으로도 제정할 조례에 대하여 분석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음
- 조례의 사후적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입법평가위원회 또는 입법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평가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회를 통해 사전적으로도 제정할 조례에 대하여 분석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음
- 경기도의 사전·사후 입법 평가에 대한 경험적 사례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은 첫째, 평가결과에서 개정 및 폐지 등의 의견이 실제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점, 둘째, 사전적 평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셋째, 사후 평가지표의 항목, 척도가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임(임영덕. 2020)
-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지 않으나, 사전평가로써 졸속 조례나 효과가 부확실한 조례의 제정을 예방할 수 있고, 평가결과의 환류에 따라 실효성을 점검하여 입법역량을 높일 수 있으며, 조례의 실질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입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2) 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

- 본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장의정활동은 의회의 각종 위원회와 의원들의 일상적인 의정활동의 내용을 나열할 것임.
- 그럼에도 본 조례를 의원의 현장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회가 주권자인 주민에 봉사하고 복무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의회 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본 조례는 그 동안 의회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여건에서 시행되어 왔던 의회운영의 제도와 관행을 더 민주적으로 개선하고 지역구 주민을 대변하는 개별의원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발전적인 조례라 할 수 있음

(4)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 광역의회의 관련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조례의 내용에 있어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음

※ 광역시·도의회 각종 회의 운영에 대한 자치법규의 근거 검토

○ 연석회의

- 이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광역시·도의회의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연석회의)

-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 ② 연석회의를 열려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에 적어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 연석회의에 관해서 국회는 국회규칙이 아닌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광역시·도의회에서도 회의규칙이 아닌 조례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국회는 대부분의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 수준에서 기본법인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음

○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 또는 간담회

- 공식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명시한 법적 근거는 없음
- 의회의 특성상 관례화된 비공식적·집단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공식적 결정기구는 아님
- 정형화된 활동은 없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음
 - 교섭단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집단지도체제 역할(경기도 의회 사례: 본회의에서 선출된 상임위원장으로 지도부의 권한이 있음을 근거로 함) (「뉴그린저널」 2023. 1. 19.)
 -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결의문 등 입장 표명
 - 의회를 대표한 현장활동
 -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통한 의견 조율 등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상북도의회와 타 광역시·도의회의 자치법규를 비교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IV-15> 와 같이 나타남

<표 IV-15> 본 과제에서 검토한 경상북도의회와 타광역의회의 조례·규칙제정 비교표

조례 및 규칙 명칭	경상북도의회	
	제정	미제정
의회 기본 조례		○
광역의회별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규칙		○
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	
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고문변호사 운영조례)	○	
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의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광역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		○
의회 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	

V. 경북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방안

1. 경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 검토

1) 경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의회 기본조례란 의회의 기본적 사항을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한 의회 운영의 최고규범을 의미함
 - 의회 기본 조례는 자치권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입장에서 주민, 단체장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규범임
- 「지방자치법」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의회와 관련된 기본적 사항을 규범화할 필요가 있음
- 제Ⅲ장의 광역자치단체의회 간 비교와 국회와의 비교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방 의회의 기본 조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가짐
 - 지방의회 내부규율에서 개별 조례나 규칙에 대하여 기본 조례를 둬으로써 ‘제도적 수준’을 높여 독립성과 자율성과 관계된 위상을 정립한다는 상징성을 가짐
 - 또한 의회운영의 내부 규율에서 기본 조례를 중심으로 다른 조례와 규칙 간 통합성·체계성을 갖추어, 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의회의 가치를 쉽게 이해하도록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광역시·도의회 뿐만 아니라 시군구 의회에서도 기본 조례 제정이 활성화 되고 있음(2024년 1월 현재 45개의 시군구의회)
-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의회 운영 선진화의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앞서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의 ‘상징적 기본 조례형’ 보다는 서울시와 여타 광역시의 ‘실질적 기본법규체계’를 갖춘 기본 조례의 형태로 구상함이 바람직함

2) 경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시 기본 내용 및 기본틀

- 경상북도 현행 자치법규의 연관사항을 검토하여 기본조례에 포함하여야 할 ‘기본틀’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경상북도의회 기본 조례의 구성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V-1> 경상북도의회 기본조례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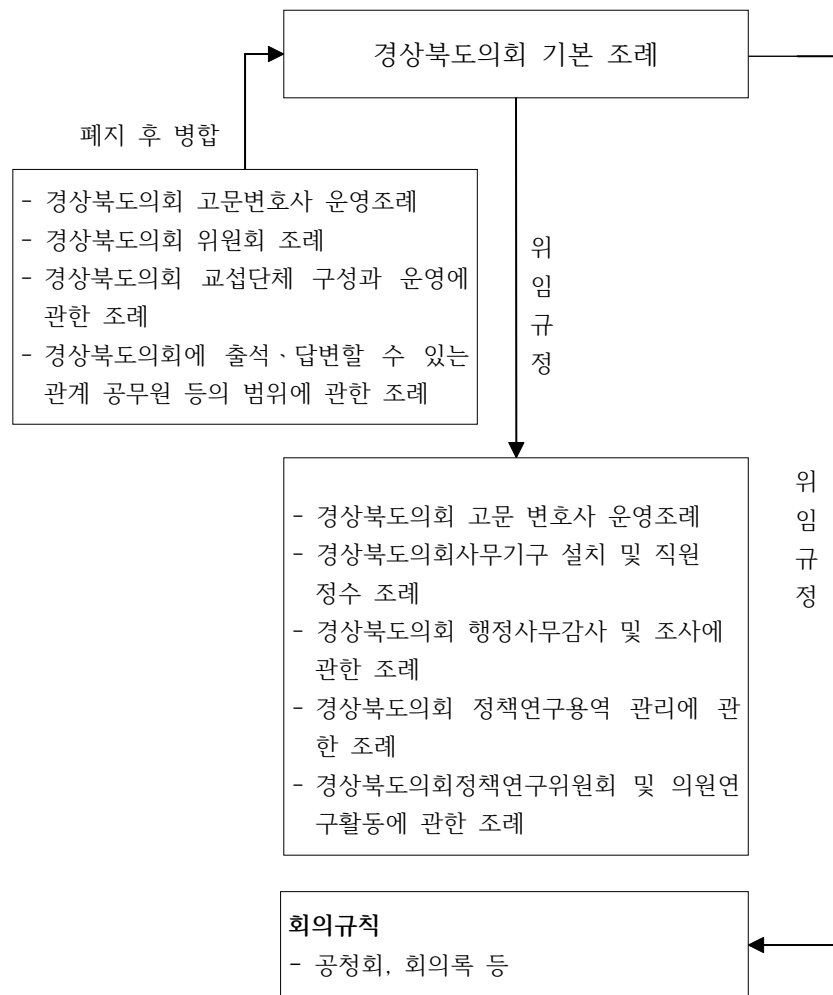
지방의회 관련 규정			기본 조례 주요 내용
지방의회 설치	-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		총칙
			기본 이념
			의정활동 원칙
의회의 구성주체	-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원의 선서, 청가 및 결석, 사직 등
의회의 권한과 운영	의회의 권한	의결권	의원의 권리와 의무
		감사권	
		청원수리권	
	의회기구	의장단	의장 추진체계
		위원회	위원회 설치·운영
	의정운영	형식요건	의정운영체계 질서 및 경호 등
		내용요건	
		내부규율	
주민과의 관계			지역주민의 권리와 의회의 의무
집행기관과의 관계			자치단체장의 의회 존중

- 경상북도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한다면, 총칙, 지방의회, 의원, 의회의 권한 및 운영, 주민과의 관계, 집행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장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임
-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국회는 기본법인 「국회법」에 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여 국회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인

사청문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지방의회와 같이 회의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는 「회의규칙」은 없음(반면, 공청회, 청문회,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定數),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회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 「국회법」을 국회 관련법규의 기본법으로 한 법규체계를 원용할 필요가 있음



[그림 V-1]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체계 기본틀

- [그림 V-1] 에 나타나 있듯이 산재되어 있는 조례는 기본 조례 하나에 병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의회운영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경상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은 기본 조례에 병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

- 광역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 광역시·도의회는 도청과 교육청의 두 개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산을 해야 함
 - 광역시·도의 막대한 예산 규모를 심도있게 살펴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청과 교육청과 같은 별개의 예산을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전문성에도 취약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원적 운영의 필요성
 -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의 전문화된 조직의 지원을 받고, 또한 개인 보좌직원들의 지원을 통해 활동하는 것에 비하면, 광역시·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위원실의 몇 명에 불과한 직원들의 지원을 받는 것에 불과하여 예결위 활동을 하기에 지극히 취약함
- 경상남도의회의 이원적 운영사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도청과 교육청으로 이원화하여 두 개의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음
 -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 15명,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 15명
 - 경상남도의회는 법규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시행하지는 못하였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원적 구성 및 운영의 논거

- 위원회 제도의 의의

- 현대 행정이 기능적으로 확대되고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전체 의원이 모인 본회의에서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적·능률적으로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이 채택된 것임

- 특별위원회 설치에 제한은 없음. 「지방자치법」에서도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서는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안

- 제 1 안: 경상남도의회 방식의 이원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운영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기본 조례를 제정한다면, 기본 조례에 규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
-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총 15명 이내)/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총 15명

이내)

- 제 2 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에 상설소위원회를 설치·운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24명 이내 확대
 - 두 개의 상설소위원회 설치
 - 도청 예산결산소위원회 12명 이내 / 교육청 예산결산소위원회 12명 이내
 -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별도 조례 또는 규칙에 위임
- ※ 국회의 경우 「국회법」에서 상설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국회규칙에 위임하여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상설소위원회운영준칙」에 규정하고 있음
- ※ 소위원회 설치 목적 자체가 광범위한 사안을 분야별로 전문화하고 집중하는데 목적이 있음(예를 들어, 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에는 건설소위원회, 국토계획·수자원소위원회, 교통소위원회와 같은 3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음)

2. 정책지원관 설치·운영 조례 또는 규칙 검토

- 광역시도의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와 경상남도의회를 제외하고는 조례나 규칙에 정책지원관의 업무와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음(오히려 기초자치단체 26곳에서 「정책지원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책지원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지원관이 전문위원이나 기존의 지원전문인력과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정책지원관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교육훈련, 업무수행, 그리고 평가를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관해서는 「서울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참고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의 사례를 보면, 기본 조례에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에 위임함
- 「서울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채용방법(임용계획,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절차, 임용약정, 보수, 구체적 직무범위, 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배치에서 특이한 점은 원칙적으로 의회사무처 정책지원담당관에 둔다고 하고 있으나, 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지를 의원실로 할 수 있다는 규정임

※ 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임용 확대방안

○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개방형 직위가 해당 직위 총수의 1/10로 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탄력적인 운영이 어려움

- 현재 경상북도 개방형직위 지정 및 임용 현황(2024. 1. 1. 기준)

구분	지정		임용			비고
	대상 직위	직위 지정	계	민간	공무원	
의회 사무처	13	3 (23%)	3	3	0	정책지원담당관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행정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도청 전체	195	9 (4.6%)	9	5	4	도 전체 대상직위 중 개방형 직위비중 6.1%

- 의회사무처는 10%를 초과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개방형 4호, 임기제 또는 별정직 4급) 임용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 4급(수석 전문위원) 11명 모두가 개방형이고, 5급 전문위원 11명 모두 임기제 공무원임

○ 쟁점

- 해당 직위 총수의 10% 이내라는 대통령령의 제약하에서 경상북도의회 전문위원을 일반행정 및 전문가(임기제 공무원)로 복수직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의 인사교류가 전제되어야 함.

-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에서는 교류의 적용범위에 경상북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의 적용범위에서는 경상북도의회가 규정하고 있음

○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회직렬의 신설할 경우 개방형 직위는 의회의 해당 직위의 10%로 한정될 수 밖에 없음

○ 결론

-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내·외부 전문가를 임용하기 위해서는 당장 의회직렬의 신설 보다는 개방형 임용의 확대가 정책지원의 전문성 제고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사례처럼 「경상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하여 적정 인원의 개방형 직위를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판단됨
- 반면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독립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의회직렬을 도입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개선방안

- 지방의회에서는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요구되는데, 이 경우 입법·법률전문가를 반드시 변호사로 한정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명을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로 한 경우에는 변호사로 한정됨
- 반면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로 할 경우, 법학교수 또는 입법분야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됨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충청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상남도의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이미 1999년 제정하여 개정없이 시행하고 있는 「경상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경상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광역자치단체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 검토

- 입법평가는 규범의 홍수를 막고 입법을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미연에 차단하여 정책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요구됨
-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는 2013년 광주광역시에서 제정·시행한 이후 많은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총 13개 자치단체에서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 중 의회가 분석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6개(세종특별자치시는 의회조례로 제정)이며, 단체장이 분석주체가 되는 경우 7개임
 - 분석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나, 어느 경우가 더 효과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평가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은 집행부 보다 입법기관인 의회의 적극성이 필요한 측면으로 판단됨
- 경기도는 사전과 사후 모두 평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제정 전과 후 모두에 대한 분석·평가를 담당함
 - 입법영향평가의 주체는 의회의 입법정책위원회로 하고 있음
 - 사전적 입법평가는 입법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중복되는 경향임
 - 따라서 사후적 입법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입법평가는 그것을 지지하는 분석의 과학성이 요구됨
 - 관련 정보 수집·분석, 이해관계자 면담 등이 수반되는 입안심사기준표 항목검토 등의 방법 이용이 필요

- 이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영향분석 지표 시행결과 평가를 참고 할 수 있을 것임

5. 광역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검토

- 의정자문위원회는 7개 광역의회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의정자문위원회(광주시에서는 정책네트워크로 표현)는 지방의회의 의정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 자문은 물론 소통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음
-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연구조사와 자료수집, 의회지정 연구과제의 연구, 의회의 의제개발과 정책대안 수립을 위한 자문,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와 같은 것으로 모두 대동소이함
- 각계의 전문가나 식견을 가진 사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등으로 구성
- 지방의회 의정활동에서 다양한 의견의 청취와 각계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의정자문위원회 또는 정책네트워크 형성은 바람직한 방향임
- 따라서 경상북도의회에서도 기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참조하여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음

6. 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검토

- 현장의정활동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발전을 위해 직접적인 현장 참여활동을 통하여 도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경기도의회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현장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회가 주권자인 주민에 봉사하고 복무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행 경기도 의회와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방법을 평가한 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여 더 발전적인 조례제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7. 의회 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검토

- 2022년 1월 13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등에서 비롯된 광역의회의 의정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의회의 운영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은 당위임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시급한 과제할 할 수 있음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의회운영제도 개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룰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의 변화에 따라 의회의 운영·발전에 요구되는 제도개선 사항
 - 지역적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특별법 또는 혁신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 경북도의회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VI. 결론

-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지방의회의 위상이 크게 강화되는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음
- 이러한 개정 법의 취지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 그리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한 측면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최근 별도의 「지방의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기까지는 현행 「지방자치법」 하에서 의회 자치법규를 정비함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서 지방의회 운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후속적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걸맞는 자치조례 및 규칙의 정비가 요구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역량의 구성요소로서 지방의회 사무조직, 지방의회 공무원 인사, 정책지원 전문인력(전문위원 및 정책지원관), 지방의회 운영 자율성을 설정하고, 이에 관한 지방의회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미비점이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방의회 역량 강화하고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함
-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①자치법규의 기본틀, ②지방의회 지원조직의 체계, ③의회공무원 인사자율성과 전문성 강화, ④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활용의 효율화, ⑤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가 포함됨
- 국회와 광역지방의회의 운영법규체계의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법률을 제·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국회

의 운영에 관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스스로 정할 수 있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반하여 광역시·도의회 경우에는 법률과 명령·규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자율성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음

- 「지방자치법」은 다수의 많은 항목에 대해 조례, 의회규칙 및 회의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조례가 산재되게 하여 전체적인 정합성이 취약할 수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의회의 자치법규의 비교분석을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각 광역의회에서는 여건에 따라 특정한 업무의 담당관과 전문위원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함
- 조례나 규칙에 정책지원관의 업무와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음. 이로 인해 전문위원이나 기존의 지원 전문인력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의회에서는 공무원이 민간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식견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경상북도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는 변호사만을 위촉함. 나머지 의회에서는 다른 전문가들도 위촉 가능함
- 경상북도 의회는 의원이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다른 광역의회에서는 2-3개의 연구단체에 소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입법을 평가하는 조례를 제정한 경우는 13개 광역의회가 있음. 이 중 경기도는 입법 사전과 사후 모두에 대하여 영향분석을 하고 있음
- 의정자문위원회는 7개 광역의회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연구조사와 자료수집, 의회지정 연구과제의 연구, 의회의 의제개발과 정책대안 수립을 위한 자문,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와 같은 것으로 모두 대동 소이함

○ 경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법」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상북도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의회와 관련된 기본적 사항을 규범화할 필요가 있음. 즉, 지방의회 기본 조례를 통하여 ‘제도적 수준’을 높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운영의 독립성, 민주성,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의회 운영 선진화의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경기도의회의 ‘상징적 기본 조례형’ 보다는 서울시와 여타 광역시의 ‘실질적 기본법규 체계’를 갖춘 기본 조례의 형태로 구상이 바람직함
- 이 경우 기본 조례에 담는 내용으로 인해 다른 조례의 폐지나 개정이 요구됨 (예를 들어 위원회 운영조례, 회의 규칙 등)
- 정책지원관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교육훈련, 업무수행, 그리고 평가를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전문위원은 전문보직경로를 설정하여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에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상북도에서도 조례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의회가 주체가 되는 ‘입법영향평가조례’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 의정활동에서 다양한 의견의 청취와 각계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의정자문위원회 또는 정책네트워크 형성은 바람직한 방향임. 따라서 경상북도의회에서도 기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참조하여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는 경기도 의회와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만 제정하고 있는 바, 기존의 현장의정활동의 내용과 방법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여 더 발전적인 조례제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1월 13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등에서 비롯된 광역의회의 의정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의회의 운영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은 당위임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시급한 과제할 할 수 있음. 따라서 ”(가칭)「경상북

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하면 아래 <표 VI-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VI-1> 경북도의회 자치법규 개선방향

항목	발전방향		주요 내용
	제정	개정	
의회 기본조례	○		기본이념, 원칙, 의원, 의회권한, 운영, 주민과의 관계, 단체장과의 관계
정책지원관 설치운영 조례	○		채용, 배치, 업무범위, 지휘감독, 교육훈련 등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전문위원 전문성 제고 방안(보직경로 설정 등)
경상북도의회고문변호사 조례		○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변경 변호사 이외의 법률전문가 활용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조례 제정 사전 및 사후 평가제도 도입 검토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		자문 이외에 소통을 포함하는 정책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검토
의회현장활동 운영조례	○		의정에서 현장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제도 마련
의회운영제도 개선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참고 자방자치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의회제도 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모색

참고문헌

- 강상원·이승모. (2008). 광역의회 의정활동 특성분석: 서울시의회 (1991-2006)를 중심으로. 「행정문제논집」, 23(2): 67-98.
- 국회사무처. (2016). 「국회법해설」.
- (2015). 「업무현황보고」.
- 국회입법조사처. (2018). 「지표로 보는 이슈」, 제128호.
- 박기관. (2019). 광역의회 의정활동의 성과평가와 과제. 「한국행정논집」, 28(3).
- 박노수. (202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실천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 (202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천방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박순종·박기관. (202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직렬 신설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4(2): 65-86.
- 박형규·전부열·성은빈·홍수동. (2019).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지원제도 개선방안. 「GRI논총」, 제21권 2호: 161-183.
- 신원득. (2006). 경기도의회 의정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발전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안성수·정세영. (2021). 지방의회 정책지원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 경상남도의회를 중심으로. 「정책개발연구」, 제21권 제1호: 193-217.
- 엄영호·손선화·박나라·김정숙. (2020). 집행부와 의회의 역량이 지방정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 「사회과학논집」, 52(2): 143-163.
- 오영균. (2015). 지방의회 지원기구 직무역량 및 직무만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9(3): 27-45.

- 윤혜진·박순종. (2019). 지방의회 청원 처리결과의 영향요인 분석-제 7 대~ 제 9 대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1(2): 237-262.
- 이관행. (2014).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의정지원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논집」, 14(0):18-37.
- 임영덕. (2020). 「지방자치단체 입법평가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따른 시도의회사무처 조직 및 인력운영 개편방안」.
- (2019). 「광역의회와 의회사무처실태진단 및 개선방안. 2019」.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직렬 신설 방안에 관한 연구」.
- 최인정·김상봉. (2018).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전라북도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0(2): 59-94.
- 최춘규. (2020).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에 관한 입법적 연구-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의 법적 고찰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입법학연구」, 17(2).
- 하동현·안영훈. (2013).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한일 비교분석. 「한국행정학회 2013행정학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 하혜영. (2021).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809호, 국회입법조사처.
- 행정안전부.(2022).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2022).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 행정안전부.
- 「뉴그린저널」 2023. 1. 19.
- 「빅데이터뉴스」. 2019. 10. 23.